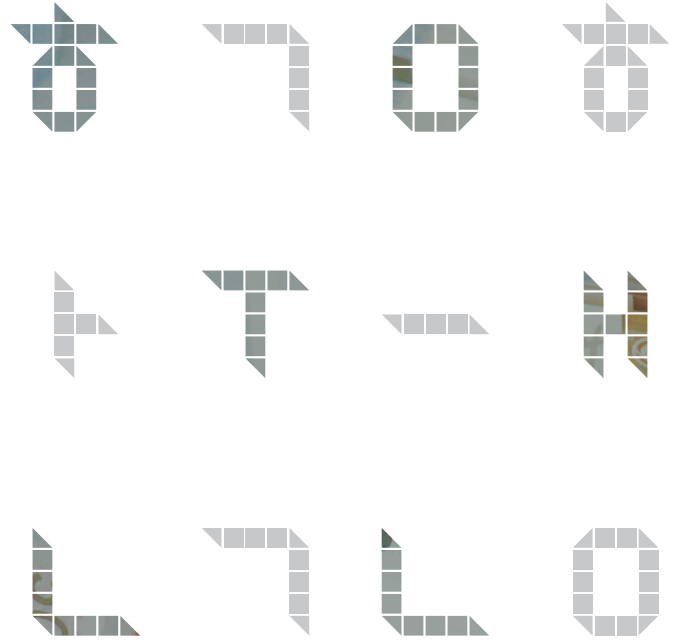


한국은행의 발권업무



2022. 5





한국은행의 발권업무

2022. 5



차례

I. 현용화폐	3
1. 현용화폐	3
가. 은행권	3
나. 주화	6
2. 기념화폐	7
3. 현용 은행권의 주요 위조방지장치	10
II. 화폐의 순환	23
1. 제조	24
2. 발행과 유통	24
3. 환수	25
4. 정사 및 감사	25
5. 소각	25
6. 금융기관의 역할	26
가. 화폐 유통창구	26
나. 유통화폐 정화	26
III. 한국은행의 발권업무	29
1. 새 화폐 발행	29
2. 화폐의 지급과 수납	30
가. 화폐의 지급	30
나. 화폐의 수납	32
3. 화폐정사	39

가. 의의	39
나. 정사 대상	39
다. 정사업무의 목적	39
라. 정사 방법	40
마. 정사결과 과부족금의 정리	41
바. 위조·변조 화폐의 처리	42
4. 화폐교환	44
가. 다른 종류의 화폐로 교환	44
나. 손상화폐 교환	44
5. 화폐의 유통 원활화	47
가. 주화수급정보센터 운영	47
나. 돈 깨끗이 쓰기 홍보	47
다.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홍보	48
【참고자료】	49
I. 주요 발권정책 추진사업	51
1. 화폐교환 기준 변경	53
2. 대량주화 교환을 위한 온라인 예약제 도입	54
3. 대량 손상주화 무게 기준 수납방식 도입	55
4.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홍보	57
5. 현송부문 안전대책 강화	58
6. 기획성 기념주화의 발행	60
II. 업무협조 요청사항	61
1.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63
2. 위조·변조 화폐의 특징, 처벌내용 및 발견시 행동요령	78

3. 위조지폐 취급 관련 유의사항 및 제·개정 위폐 신고서식 통보	81
4. 주화의 훼손 금지와 훼손주화 신고 방법	84

Ⅲ. 관련 법규 및 규정 발취

1. 한국은행법	87
2. 발권규정	90
3. 발권규정 시행세칙	91
4. 발권규정 시행절차	97

<<관련 서식>>

<서식 1> 서약서	111
<서식 2> 미정사화폐 입금내역서	112
<서식 3> 한국은행 화폐지급거래 등록서	113
<서식 4> 위·변조화폐 신고서	114
<서식 5> 소유권 포기서	115
<서식 6> 위·변조화폐 인수증	116
<서식 7> 주화 훼손 허가 신청서	117
<서식 8> 훼손주화 발견 신고서	119

I

현용 화폐



BANK OF KOREA

I. 현용 화폐

1. 현용 화폐

- 현재 한국은행은 은행권 4종(50,000원권, 10,000원권, 5,000원권, 1,000원권)과 주화 4종(500원화, 100원화, 50원화, 10원화)을 발행하고 있음
- 위조·변조화폐의 유통을 방지하고 화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06년에 새 5,000원권, 2007년에 새 10,000원권 및 새 1,000원권을 발행하였으며, 2009년에는 국민의 화폐사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첨단 위조방지장치를 적용한 50,000원권을 발행하였음
- 1962년 제3차 긴급통화조치에 따른 '원' 단위 화폐 도입 이후 도안이 수차례 변경되었으며, 현재 '원' 단위 화폐는 은행권 29종, 주화 15종이며 이들 화폐는 모두 현재도 유통 가능한 법정화폐(legal tender)임

가. 은행권

(1) 주된 유통은행권

권 종	다 1,000원권	마 5,000원권	바 10,000원권	50,000원권
최초발행 일자	2007. 1. 22.	2006. 1. 2.	2007. 1. 22.	2009. 6. 23.
규 격 (mm)	136×68	142×68	148×68	154×68
도안 소재	앞 면	「이황」 초상	「이이」 초상	「세종대왕」 초상
	뒷 면	계상정거도	초충도	혼천의, 광학천체망원경
기 조 색	청색	적황색	녹색	황색
숨은그림	「이황」 초상	「이이」 초상	「세종대왕」 초상	「신사임당」 초상
위조·변조 방지장치	부분노출은선 요판잠상 미세문자 돌출은화(SPAS) 색변환잉크(CSI) 숨은그림 블록인쇄	숨은은선 요판잠상 미세문자 돌출은화(SPAS) 색변환잉크(CSI) 조각형 홀로그램 숨은막대 숨은그림 블록인쇄	숨은은선 요판잠상 미세문자 돌출은화(SPAS) 색변환잉크(CSI) 조각형 홀로그램 숨은막대 숨은그림 블록인쇄	숨은은선 입체형 부분노출은선 요판잠상 미세문자 돌출은화(SPAS) 색변환잉크(CSI) 띠형 홀로그램 숨은그림 가로확대형 기번호 블록인쇄

(2) 그 밖의 현용은행권

액면	발행 차수	최초 발행 일자	발행 중지 ¹⁾ 일자	규격(mm)	앞뒷면 도안소재	비 고
10,000원권	가	1973. 6.12.	1981. 11.10.	171×81	「세종대왕」 초상 / 경복궁 근정전	
	나	1979. 6.15.	1993. 5.12.		「세종대왕」 초상 / 경희루, 무궁화	- 세종대왕 표준영정 채택
	다	1983. 10.8.	2016. 6.1.	161×76	「세종대왕」 초상 / 경희루	- 앞뒷면맞춤 등 위조 방지장치 보강 - 용지품질 개선
	라	1994. 1.20.	2016. 6.1.			- 부분노출은선, 미세문자, 요관잠상, 광간섭무늬 등 위조방지장치 강화
	마	2000. 6.19.	2016. 6.1.			- 색변환잉크, 들출은화 등 위조방지장치 강화
5,000원권	가	1972. 7.1.	1980. 12.1.	167×77	「이이」 초상 / 한국은행 본관	
	나	1977. 6.1.	1993. 5.12.		「이이」 초상 / 오죽헌, 무궁화	- 이이 표준영정 채택
	다	1983. 6.11.	2016. 6.1.	156×76	「이이」 초상 / 오죽헌	- 앞뒷면맞춤 등 위조방지 장치 보강 - 용지품질 개선
	라	2002. 6.12.	2016. 6.1.			- 부분노출은선, 숨은 막대 등 위조방지장치 강화
1,000원권	가	1975. 8.14.	1993. 5.12.	163×73	「이황」 초상, 무궁화 / 도산서원	- 이황 표준영정 채택
	나	1983. 6.11.	2016. 6.1.	151×76	「이황」 초상, 투호 / 도산서원	- 앞뒷면맞춤 등 위조방지장치 보강 - 용지품질 개선

주: 1) 한국은행 총재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발권창구에서 특정 화폐의 공급을 중지하는 조치를 의미하며, 발행이 중지되더라도 시중에서의 통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I. 현용 화폐

액면	발행차수	최초발행일자	발행중지일자	규격(mm)	앞뒷면도안소재	비고
500원권	가	1962. 6.10.	1967. 2.3.	156×66	남대문 / 성화	- 영국 토마스 데라루사 제조
	나	1966. 8.16.	1975. 5.10.	165×73	남대문 / 거북선, 판옥선	- 한국조폐공사 제조
	다	1973. 9.1.	1993. 5.12.	159×69	「이순신」 초상 / 현충사	- 한국조폐공사 제조
100원권	가	1962. 6.10.	1969. 2.14.	156×66	독립문 / 성화	- 영국 토마스 데라루사 제조
	나	1962. 11.1.	1973. 10.30.		독립문 / 경회루	- 한국조폐공사 제조
	다	1965. 8.14.	1980. 12.1.		「세종대왕」 초상 / 한국은행 본관	- 국내에서 제조된 최초의 요판인쇄 은행권
50원권	가	1962. 6.10.	1970. 5.20.	156×66	해금강 총석정 / 성화	- 영국 토마스 데라루사 제조
	나	1969. 3.21.	1973. 10.30.	149×64	탑골공원 / 봉화, 무궁화	- 한국조폐공사 제조
10원권	가	1962. 6.10.	1962. 9.1.	108×54	한국은행 휘장 / 10 숫자	- 영국 토마스 데라루사 제조
	나	1962. 9.21.	1973. 10.30.	140×63	첨성대 / 거북선	- 한국조폐공사 제조
5원권	-	1962. 6.10.	1969. 5.1.	94×50	한국은행 휘장 / 5 숫자	- 영국 토마스 데라루사 제조
1원권	-	1962. 6.10.	1970. 5.20.	94×50	한국은행 휘장 / 1 숫자	- 영국 토마스 데라루사 제조
50전권	-	1962. 12.1.	1980. 12.1.	90×50	당초문양	- 한국조폐공사 제조
10전권	-	1962. 12.1.	1980. 12.1.	90×50	당초문양	- 한국조폐공사 제조

나. 주 화

(1) 주된 유통주화

화 종		라10원화	나50원화	나100원화	500원화
최초 발행일자		2006. 12. 18.	1983. 1. 15.	1983. 1. 15.	1982. 6. 12.
도안 소재	앞면	다보탑	벼이삭	이순신	학
	뒷면	10 숫자	50 숫자	100 숫자	500 숫자
소재 (%)		구리 48 알루미늄 52	구리 70 아연 18 니켈 12	구리 75 니켈 25	구리 75 니켈 25
지 름 (mm)		18.00	21.60	24.00	26.50
무 계 (g)		1.22	4.16	5.42	7.70

(2) 그 밖의 현용주화

액면	발행 차수	최초 발행 일자	발행 중지 일자	소재 (%)	지 름 (mm)	무 계 (g)	앞뒷면 도안소재	비 고
100원화	가	1970. 11.30.	-	구리 75 니켈 25	24.00	5.42	이순신 / 100 숫자	- 톱니 110개
50원화	가	1972. 12. 1.	-	구리 70 아연 18 니켈 12	21.60	4.16	벼이삭 / 50 숫자	- 톱니 109개
10원화	가	1966. 8.16.	-	구리 88 아연 12	22.86	4.22	다보탑 / 10 숫자	- 소재 구성비율 변경 - 도안 정비
	나	1970. 7.16.	-	구리 65 아연 35		4.06		
	다	1983. 1.15.	-					
5원화	가	1966. 8.16.	-	구리 88 아연 12	20.40	3.09	거북선 / 5 숫자	- 소재 구성비율 변경 - 도안 정비
	나	1970. 7.16.	-	구리 65 아연 35		2.95		
	다	1983. 1.15.	-					
1원화	가	1966. 8.16.	1980. 12.1.	구리 60 아연 40	17.20	1.70	무궁화 / 1 숫자	- 소재 변경 - 도안 정비
	나	1968. 8.26.	-	알루미늄 100		0.729		
	다	1983. 1.15.	-					

2. 기념화폐

- 한국은행이 국가적 행사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발행하며, 현용화폐와 동일한 법화로서 공·사적 목적의 모든 거래에 지급결제수단으로 무제한 통용됨
- 기념화폐의 시중 거래가격이 액면을 초과하더라도 한국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현용화폐로 교환할 때에는 기념화폐의 액면으로만 교환됨

기념화폐 발행 현황

발행연도	명 칭	횟수	권화종수
1971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 기념주화	1	12
1975	광복 30주년 기념주화	1	1
1978	제4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기념주화	1	2
1981	대한민국 제5공화국 기념주화	1	3
1982	서울올림픽대회유치 기념주화	2	6
1983			
1984	천주교 전래 200주년 기념주화	1	2
1986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기념주화	1	5
1987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주화	5	32
1988			
1993	대전세계박람회 기념주화	1	6
1995	광복 50주년 기념주화	1	2
	유엔창설 50주년 기념주화	1	1
1998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주화	1	1
2000	새천년 기념주화	1	1
	한국은행 창립 50주년 기념주화	1	1
	ASEM 2000 기념주화	1	1
2001	2002 FIFA 월드컵 축구대회 기념주화	2	14
2002			
2002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부산 2002 기념주화	1	6
2005	광복 60년 기념주화	1	1
	2005년 APEC 정상회의 기념주화	1	1
2006	한글날 국경일 제정 기념주화	1	1
2007	전통민속놀이(탈춤) 기념주화	1	1
2008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주화	1	1
	전통민속놀이(강강술래) 기념주화	1	1
2009	전통민속놀이(영산줄다리기) 기념주화	1	1
2010	유네스코 세계유산(종묘) 기념주화	1	1
	서울 G20 정상회의 기념주화	1	1
201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념주화	1	1
	유네스코 세계유산(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기념주화	1	1

I. 현용 화폐

발행연도	명 칭	횟수	권회중수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기념주화	1	1
	여수세계박람회 기념주화	1	6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기념주화	1	1
	유네스코 세계유산(석굴암과 불국사) 기념주화	1	1
2013	승례문 복구 기념주화	1	1
	나로호 발사 성공 기념주화	1	1
	한국의 문화유산(창덕궁, 수원화성, 한글) 기념주화	1	3
2014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념주화	1	6
	교황 방한 기념주화	1	2
	한국의 문화유산(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해인사 장경판전, 남한산성) 기념주화	1	3
2015	제7차 세계물포럼 기념주화	1	1
	광복 70년 기념주화	1	3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기념주화	1	1
	한국의 문화유산(경주역사유적지구, 백제역사유적지구) 기념주화	1	2
2016	한국의 문화유산(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조선왕릉) 기념주화	1	2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기념주화 및 2018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주화	2	23
2017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기념은행권	1	1
	한국의 국립공원(지리산, 북한산) 기념주화	1	2
2018	한국의 국립공원(덕유산, 무등산, 한려해상) 기념주화	1	3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주화	3	5
2019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념주화	1	1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기념주화	1	1
	한국의 국립공원(속리산, 내장산, 경주) 기념주화	1	3
2020	한국의 국립공원(월악산, 계룡산, 한라산, 태안해안) 기념주화	1	4
2021	한국의 국립공원(소백산, 태백산, 다도해해상, 주왕산) 기념주화	1	4
2022	한국의 국립공원(가야산, 변산반도, 오대산) 기념주화	1	3

<참 고>

기념은행권 및 기념주화의 모습

(1) 기념은행권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념은행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념은행권」의 모습

앞 면	뒷 면
	

(2) 기념주화 : 2022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 중 은화 I *

* 도안 소재 : 가야산

「2022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의 모습

화종	앞 면	뒷 면
은화 I		

3. 현용 은행권의 주요 위조방지장치

- 우리나라의 현용 은행권에는 위조방지를 위해 홀로그램(hologram), 숨은그림(watermark), 색변환잉크(color shifting ink) 등 다양한 위조방지장치를 적용하고 있음

현용 은행권의 주요 위조방지장치

위조방지장치	50,000원권	10,000원권	5,000원권	1,000원권
<p>홀로그램 : 보는 각도에 따라 우리나라 지도, 태극과 액면 숫자, 4괘가 번갈아 나타나면서 색상이 변하는 얇은 특수 필름</p>				—
<p>색변환잉크(CSI) :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특수잉크</p>	<p>50000</p> <p>자홍색 ↔ 녹색</p>	<p>10000</p> <p>황금색 ↔ 녹색</p>	<p>5000</p> <p>황금색 ↔ 녹색</p>	<p>1000</p> <p>녹색 ↔ 청색</p>
<p>요판잠상 : 눈 높이에서 비스듬히 볼 때 드러나 보이는 불록인쇄된 숫자 또는 문자</p>				
<p>미세문자(micro lettering) : 육안으로 거의 볼 수 없고 확대경으로 식별 가능한 문자</p>				
<p>숨은은선(security thread) : 은행권 용지에 삽입된 형광 플라스틱 띠</p>				—

위조방지장치	50,000원권	10,000원권	5,000원권	1,000원권
<p>숨은그림(watermark) : 용지의 얇은 부분과 두꺼운 부분의 명암차이를 이용하여 만든 도안인물초상(원편의 세로 숫자는 돌출은화임)</p>				
<p>돌출은화(SPAS) : 앞면 숨은그림 왼쪽(오만원권은 오른쪽)에 보이는 액면숫자(오만원권은 오각형 안의 '5')</p>				
<p>숨은막대(watermark bar) : 숨은그림을 만든 원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만든 막대</p>	—			—
<p>블록인쇄(intaglio printing) : 블록인쇄되어 오тол도톨한 촉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자·숫자·도안인물 등</p>				
<p>앞뒷면맞춤(see-through-register) : 은행권의 앞면과 뒷면에 분할인쇄 되어 빛에 비추어 볼 때 드러나는 완성된 태극무늬</p>				
<p>부분노출은선(windowed thread) : 은행권에 부분적으로 삽입(노출)된 얇은 필름 띠(컬러복사기로 복사하면 검은색으로 변함)</p> <p>오만원권의 입체형 부분노출은선(3D MOTION) : 은행권을 상하(좌우)로 움직이면 태극무늬는 좌우(상하)로 움직이는 특수입체형의 얇은 필름 띠</p>		—		
<p>용지의 촉감 : 은행권 용지는 특수한 섬유질 용지이므로 일반종이와는 촉감이 다름</p>				
<p>형광잉크, 형광색사 : 자외선 감식기로 은행권에 자외선을 투사하면 형광무늬와 은행권에 불규칙적으로 흩어져 있는 형광색사가 드러남</p>				

<참 고>

은행권별 위조방지장치

(1) 50,000원권 : 2009.6.23일부터 발행

■ 새롭게 적용된 첨단 위조방지장치

① 띠형 홀로그램

은행권을 기울이면 보는 각도에 따라 태극, 우리나라 지도, 4개의 3가지 무늬가 띠의 상·중·하 3곳에 번갈아 나타나고, 그 사이로는 세로로 표시된 액면 숫자 "50000"이 보입니다.



② 입체형 부분노출은선 패턴 MOTION

은행권을 상하로 움직이면 띠 안에 있는 태극무늬가 좌우로, 은행권을 좌우로 움직이면 태극무늬가 상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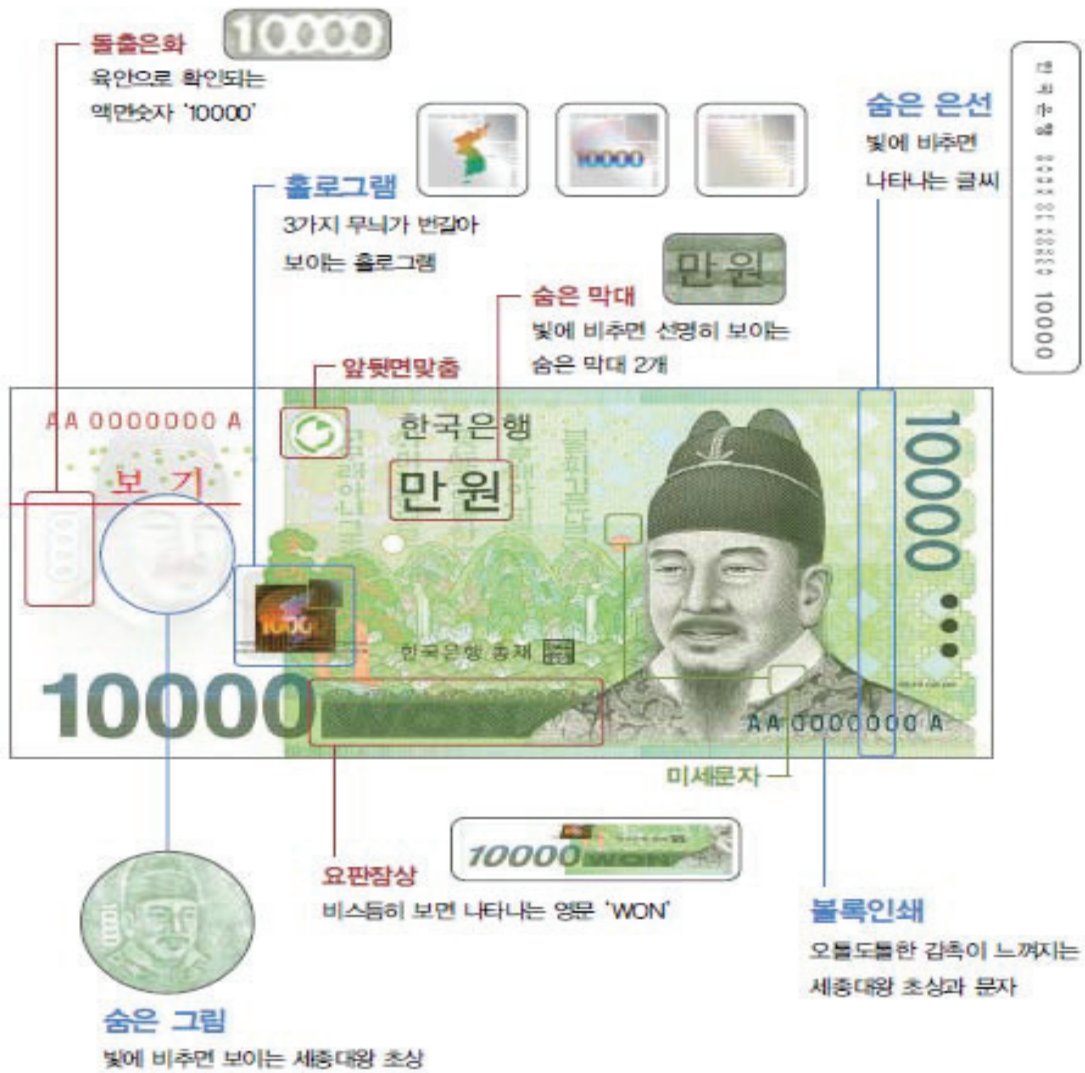
③ 가로확대형 기번호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기호 및 번호의 문자와 숫자의 크기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AA 0000000 A
AA 0000000 A



(2) 바 10,000원권 : 2007.1.22일부터 발행





감별도구로 확인하는 위조방지장치



형광잉크·형광색사

형광빛을 내는 가느다란 특수 섬유를 은행권 용지 속에 삽입한 것으로 자외선 형광램프를 비추면 여러 형광빛을 내는 섬유가 용지 전체에 흩어져 있습니다.



미세문자

육안으로는 잘 확인되지 않고 확대경 등을 사용해야만 확인 가능한 작은 문자로서 컬러복사 및 컬러프린터로 위조할 경우 이들 미세문자가 그대로 구현되지 않고 선이나 점선으로 나타납니다.

(3) 마 5,000원권 : 2006. 1.2일부터 발행





감별도구로 확인하는 위조방지장치



형광잉크 · 형광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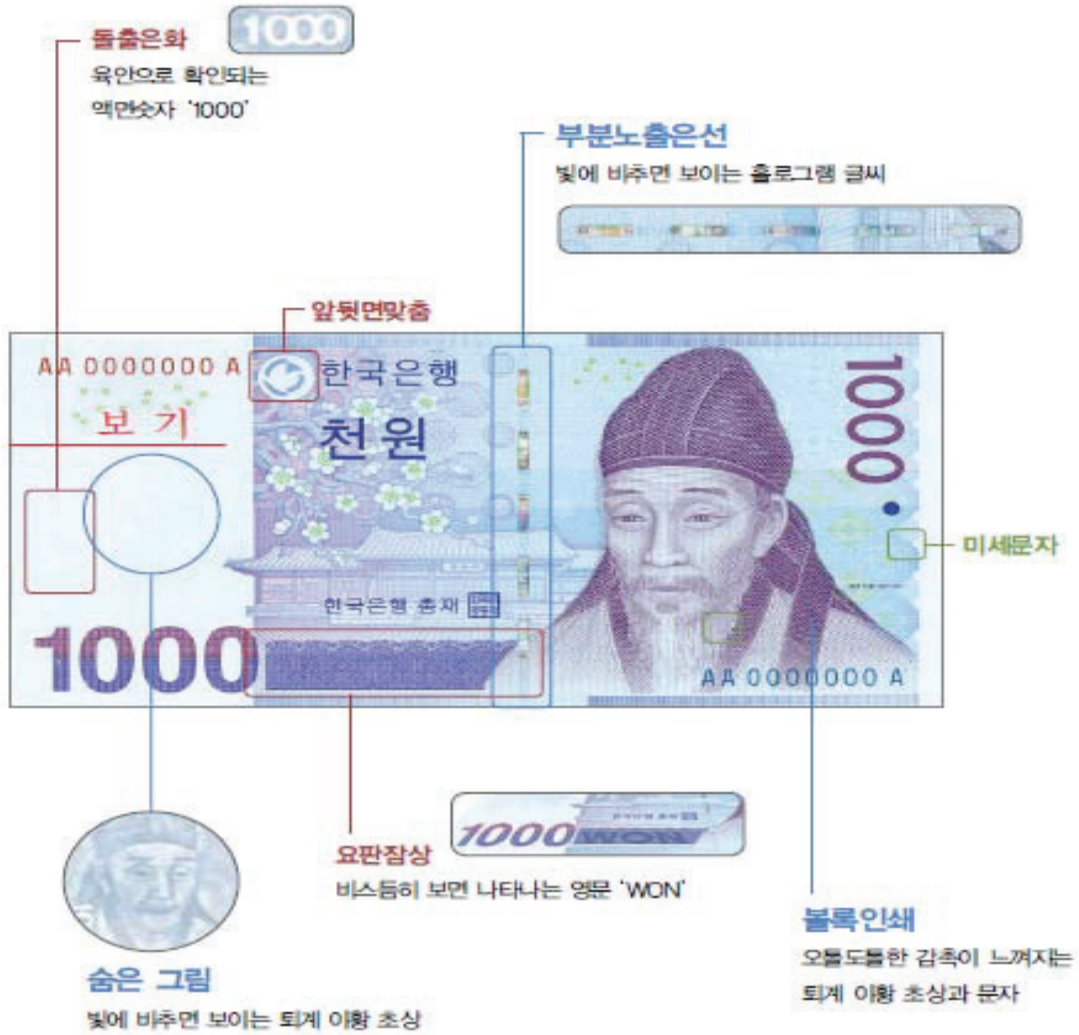
형광빛을 내는 가느다란 특수 섬유를 은행권 용지 속에 삽입한 것으로 자외선 형광램프를 비추면 여러 형광빛을 내는 섬유가 용지 전체에 흩어져 있습니다.



미세문자

육안으로는 잘 확인되지 않고 확대경 등을 사용해야만 확인 가능한 작은 문자로서 컬러복사 및 컬러프린터로 위조할 경우 이들 미세문자가 그대로 구현되지 않고 선이나 점선으로 나타납니다.

(4) 다 1,000원권 : 2007.1.22일부터 발행





감별도구로 확인하는 위조방지장치



형광잉크 · 형광색사

형광빛을 내는 가느다란 특수 섬유를 은행권 용지 속에 삽입한 것으로 자외선 형광램프를 비추면 여러 형광빛을 내는 섬유가 용지 전체에 흩어져 있습니다.



미세문자

육안으로는 잘 확인되지 않고 확대경 등을 사용해야만 확인 가능한 작은 문자로서 컬러복사 및 컬러프린터로 위조할 경우 이들 미세문자가 그대로 구현되지 않고 선이나 점선으로 나타납니다.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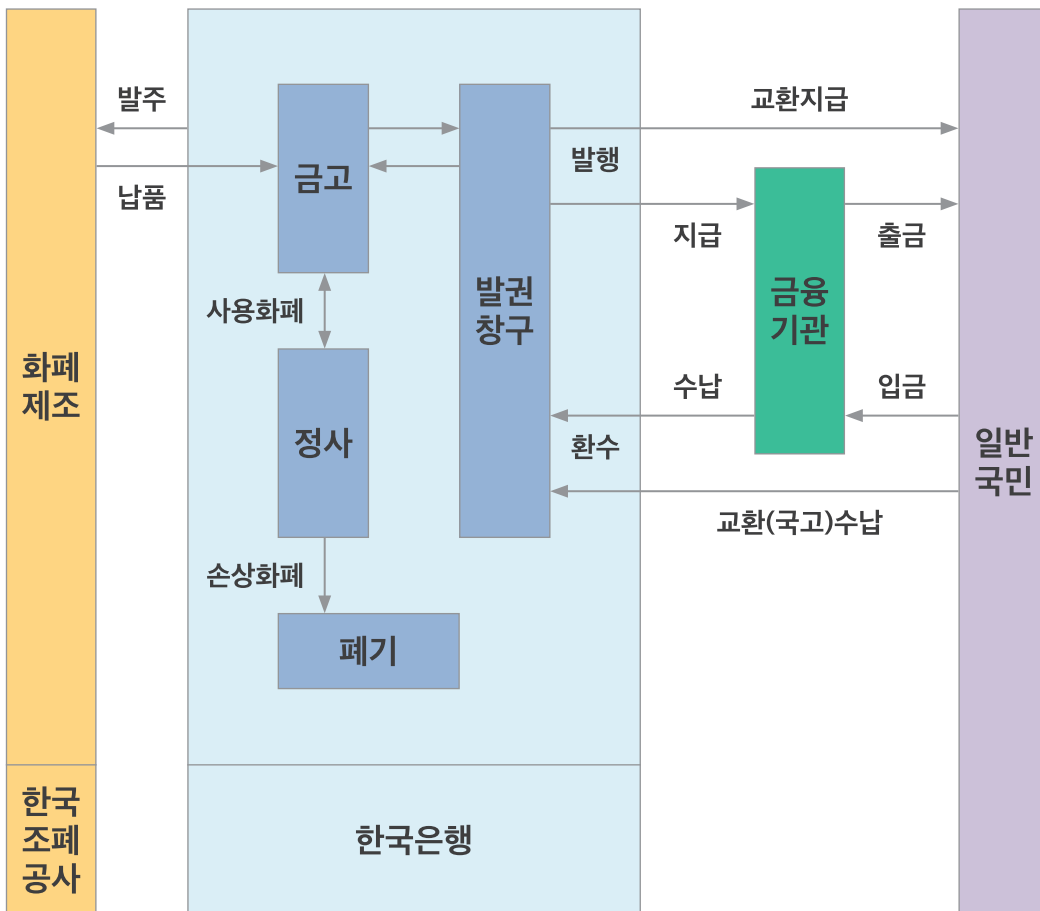
화폐의 순환



II. 화폐의 순환

- 한국은행은 화폐를 발행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에 화폐 제조를 의뢰하고, 제조가 완료되어 한국은행에 납품된 화폐를 금융기관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발행
-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화폐는 정사 과정을 거쳐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 화폐로 분류되면 다시 발행되고, 손상화폐로 분류되면 폐기 후 소각됨

화폐의 순환



1. 제조

- 한국은행은 국민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뒷받침하는 한편, 화폐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화폐수요 변동, 화폐 폐기규모, 적정 발행준비자금 보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도 말에 다음 연도의 화폐제조 필요량을 결정하여 한국조폐공사에 발주함
- 한국조폐공사는 한국은행의 화폐제조 발주에 따라 분기별 및 월별 납품 계획을 수립하고 화폐를 제조하여 한국은행에 납품하며, 한국은행은 이를 인수받아 금고에 보관함

2. 발행과 유통

-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계좌의 예금을 인출 요청하면 한국은행은 금고에 보유하고 있는 화폐(발행준비자금)를 요청 금융기관에 지급하는데, 이처럼 한국은행이 발권창구에서 화폐를 시중에 공급하는 것을 화폐의 발행이라 함
 - 한국은행은 화폐교환, 정부의 예금 인출 등으로도 화폐를 발행함
-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한국은행의 부채인 화폐발행액으로 계상됨과 동시에 법정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공·사의 모든 거래에서 핵심적인 지급결제수단으로 유통됨
 - 한편 한국은행이 발행준비 또는 화폐정사·폐기·소각 등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화폐는 한국은행의 자산(현금) 또는 부채(화폐발행액)로 계상하지 않음

3. 환수

- 시중에 유통되던 화폐가 예금, 세금납부 등의 형태로 금융기관으로 들어 오면 각 금융기관은 고객의 예금인출에 대비한 최소 화폐만을 보유*하고 그 나머지를 한국은행에 예금지급준비금과 결제자금 등으로 입금함

* 「금융기관 지급준비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최저 지급준비금 보유액은 한국은행 당좌예금 외에 해당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폐도 최저 지급준비금의 35%까지 지급준비금으로 인정

- 일반 국민도 국고금 납부 등을 위하여 한국은행에 직접 입금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화폐가 금융기관 등을 거쳐 한국은행에 들어오는 것을 화폐의 환수라 함

4. 정사 및 감사

- 정사(整査)란 환수된 화폐의 장수와 금액 확인, 위조·변조화폐 색출, 잔액·반액·무효 판정, 사용·손상화폐 구분 등과 관련된 일련의 화폐 정리 업무를 말함

- 정사 방법은 원칙적으로 은행권의 경우 자동정사기로 정사하며, 자동정사기로 정사할 수 없는 극손상권과 주화의 경우에는 화폐관리원이 수작업으로 정사(수정사)함

- 정사 결과 사용화폐로 분류된 화폐는 재발행을 위해 금고에 보관되고, 손상화폐로 분류된 화폐는 장수 및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감사(鑑査)과정

5. 소각

- 정사 및 감사 결과에 따른 손상화폐, 소손권, 발행중지화폐 등은 폐기

화폐로 분류한 후 감사인 입회 하에 은행권을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방법으로, 주화의 경우 녹이는 방법(용해)으로 소각(銷却)하여 화폐의 물리적 형태를 없앴

- 자동정사기로 정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각절차 없이 자동정사기가 손상권으로 분류하여 자동폐기 및 소각함
- 화폐관리원이 수작업으로 정사하는 경우에는 장수와 금액을 재확인하는 감사를 마친 후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방식으로 소각함
- 화폐관리원의 정사를 마친 손상주화는 녹이는 방법(용해)으로 소각함

6. 금융기관의 역할

가. 화폐 유통창구

-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인출하여 시중에 공급하고, 고객이 입금한 화폐를 한국은행에 입금함으로써 한국은행과 기업·개인 등과의 사이에서 화폐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줌

나. 유통화폐 정화

- 금융기관은 고객이 입금한 화폐를 훼손·오염·마모 등의 사유로 재사용에 부적합한 화폐(손상화폐)와 재사용 가능한 화폐(사용화폐)로 분류하여 한국은행에 입금하거나, 고객에게 사용화폐를 재지급함
- 금융기관이 화폐의 유통과정에서 손상화폐 및 위조·변조화폐를 추출하여 한국은행에 입금함으로써 시중 유통화폐의 청결도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입금한 사용화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정사를 생략하고 금융기관에 재지급함으로써 화폐관리업무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 시중 화폐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음

III

한국은행의 발권업무



BANK OF KOREA

Ⅲ. 한국은행의 발권업무

1. 새 화폐 발행

-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법화(은행권 및 주화) 발행기관으로서 정부의 승인을 얻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화폐를 발행함
- 한국은행은 새로운 규격과 도안의 화폐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다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화폐도안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화폐의 도안, 규격 등 기본사항에 대해 정부의 승인을 얻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새 화폐를 발행함
 - * 화폐도안 자문위원회는 의장(현용화폐 도안소재 선정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부총재, 기념화폐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권국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
- 새 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도안 결정에서부터 제조·발행까지 최소 20개월 이상이 소요됨

<참 고>

화폐도안과 인물초상

- 세계 각국은 화폐도안 소재로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 동식물, 문화유산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화폐 앞면 도안의 주 소재로는 정치인, 학자, 예술가 등의 인물초상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
 - 화폐의 도안소재로 인물초상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화폐도안 인물의 위엄과 훌륭한 업적이 화폐의 품위와 신뢰를 높일 수 있고 식별의 용이성 등으로 위조화폐 방지의 효과도 있기 때문임
 - 각 국의 발권당국은 화폐도안에 담을 인물을 선택할 때 국왕과 같은 특별한 인물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현존인물을 피하고 있으며,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고 있음

2. 화폐의 지급과 수납

가. 화폐의 지급

(1) 지급절차

- 금융기관은 한은금융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화폐 종류별 인출금액을 사전에 신청하고, 한국은행은 해당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인출청구의 정당여부를 확인한 후 화폐를 지급함
- 인출청구의 정당여부 확인방법
 - 한국은행 소관부서장(발권국장, 지역본부장)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한국은행 화폐지급거래 등록서」〈서식 3〉를 징구하여 거래점포와 거래직원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함
 - 한국은행 발권창구 담당직원은 금융기관 등의 거래직원으로부터 현금 인출 신청번호, 비밀번호, 신청금액 등 인출 신청내용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제시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함
 - 한은금융망에서 신청 금융기관명, 신청번호, 신청금액, 거래직원의 이름과 현송책임자 관리번호 등을 대조 확인함

<참 고>

거래점포와 거래직원 등록제

- 한국은행 발권창구 담당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에게 화폐를 지급할 때 화폐 수령자의 신분을 확인하여 화폐지급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에서의 화폐수령자를 지정·운영함으로써 권한 없는 자의 화폐수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로 1996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금융기관은 거래점포와 직원을 사전에 한국은행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거래횟수, 거래금액 등을 고려하여 최소 인원을 등록하여야 함
- 또한 인사이동 등 금융기관 내부사정으로 한국은행에 등록되지 않은 금융기관 직원이 화폐를 수령하려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담당직원이 전화로 해당 금융기관 직원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해당 금융기관의 정당수취인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가능, 다만 한은금융망으로 화폐를 인출 신청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담당직원은 반드시 사전에 등록된 거래직원에게만 화폐를 지급함

(2) 지급단위

- 은행권의 지급단위는 큰묶음, 주화의 지급단위는 큰자루 또는 상자임

(3) 화폐 지급 관련 주요 제도

(가) 제조화폐 지급한도제

- 한국은행은 매년 제조화폐 인수액과 발행준비자금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50,000원권 및 10,000원권 제조화폐의 연간 지급한도제를 운영하고 있음
 - 한국은행 소관부서장은 손상권 입금실적(장수 기준), 50,000원권 환수액, 금융기관 점포 수, 손상주화 입금실적(개수 기준) 및 위조지폐 적출률을 고려하여 금융기관별 제조화폐 지급한도를 배분함
 - 다만 최근 화폐수급 변화 등으로 제조화폐 지급한도제를 2021년 7월부터 일시 중지하고 있음
- 5,000원권과 1,000원권은 환수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다른 권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제조화폐 보유 범위 내에서 적극 공급하고 있음
- 금융기관 결제(출납)모점장은 제조화폐를 국민의 새 돈 수요 충족, 시중 유통화폐 정화 등 한국은행의 발권정책에 부합되도록 각 영업점에 적의 공급하여야 함

(나) 미정사사용화폐 재지급제도

- 한국은행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 제조화폐와 한국은행이 정사한 사용화폐를 지급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이 입금한 화폐 중 작은묶음 및 큰묶음이 파손되지 아니하고 상태가 양호한 미정사사용화폐를 한국은행의 정사를 생략하고 금융기관에 재지급하고 있음

(다) 금융기관 간 화폐 수수제도

- 한국은행과의 화폐 입출금거래를 통하여 시재금 과부족을 해소하는 대신 화폐과여 금융기관과 화폐부족 금융기관 간에 한국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화폐를 수수하는 제도로 1984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동 제도 운영으로 현송거리와 소요시간이 단축되어 금융기관의 현송 부담과 현금사고 위험이 줄어들고 현금조달 및 처분이 더욱 용이해짐

나. 화폐의 수납

(1) 수납절차

-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입금예정 금액, 화폐종류 등을 사전에 통보함
- 금융기관은 입금내역이 첨부된 당좌계정입금표를 작성하여 화폐 입금을 신청하고, 한국은행은 입금된 화폐를 검수한 후 해당 금융기관 당좌예금계좌에 입금처리 함(입금완료후 당좌계정입금증 교부)
- 금융기관은 화폐를 미정사사용화폐, 미정사손상화폐, 극손상권(소손권 포함)으로 분류하여 입금하여야 함

(미정사손상화폐와 미정사사용화폐의 구분 수납)

- 금융기관에 미정사손상화폐와 미정사사용화폐를 구분하여 입금하도록 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정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필요시 입금된 미정사사용화폐를 재지급함으로써 국민의 화폐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함임

- 한국은행은 은행권 자동정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손상권을 일반손상권*과 극손상권**으로 구분하여 입금하도록 하고 있음

* 오염, 마모, 훼손 및 소손 등의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은행권

** 은행권면의 일부가 찢겨진 것 등 훼손 또는 오염정도가 심하여 자동정사기로 정사하기 곤란한 은행권

극손상권의 유형

- ① 종이나 테이프 등을 은행권면에 덧붙인 보철권
 - ② 세탁 등에 의해 오염·훼손의 정도가 심한 손상권
 - ③ 장판 눌림 등에 의해 오염·훼손의 정도가 심한 손상권
 - ④ 동일한 화폐의 앞·뒷면이 떨어졌다가 다시 붙은 손상권
- 일반손상권으로 분류된 은행권 묶음에 극손상권이 섞여 있으면 자동정사기에 걸림현상(jam)이 발생하는 등 기기 고장이 잦아지고 효율적으로 정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극손상권은 반드시 구분하여 입금하여야 함(극손상권은 수정사 실시)

(2) 수납단위

□ 은행권 수납단위는 큰묶음, 주화 수납단위는 큰자루임

- 투명비닐로 포장되어 큰묶음과 작은묶음을 검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포대단위로도 수납할 수 있음
- 다만, 손상화폐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화폐관리 부담 완화 및 시중 유통화폐 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납단위를 달리할 수 있음
 - 큰묶음단위 미만의 극손상권의 경우에는 작은묶음단위로 검수하여 수납할 수 있음
 - 큰자루단위 미만의 미정사손상주화의 경우에는 작은자루단위로 검수하여 수납할 수 있음
 - 발행중지화폐, 기념화폐 및 한국은행 임치화폐 보관점이 입금하는 소손권 등의 경우에는 낱장으로 검수하여 수납함

(3) 화폐의 결속 및 포장 방법

(가) 은행권 작은묶음 결속

- 사용권 및 미정리권은 100장을 묶은 후 초상화가 있는 은행권면(이하 앞면)이 위로 향하도록 정리하여 그 왼쪽 끝에서 가로길이의 1/3 되는 곳에 은행권묶음 띠지의 중앙선이 위치하도록 세로로 묶어야 함
- 손상권은 은행권면의 중앙에 은행권묶음 띠지의 중앙선이 위치하도록 세로로 묶어야 함
- 사용권과 손상권의 작은묶음 결속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육안으로 사용권과 손상권의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함임
- 큰묶음단위에 미달하는 작은묶음의 경우에는 은행권묶음 띠지의 중앙선이 은행권면의 가로와 세로의 중앙에서 +자형이 되도록 묶어야 함
- 일부가 파손된 손상화폐의 경우에는 그 뒷면에 백색 용지를 덧붙여야 하며, 권면이 부족하거나 파손이 심한 손상화폐의 경우에는 그 은행권 크기의 백색 용지를 뒷면에 붙인 다음 앞면에 「전액」 또는 「반액」 등의 문구를 표시하고 판정자가 날인함
 - 극손상권 작은묶음의 경우에는 반액권이 전액권 위에 오도록 정리함
- 작은묶음을 묶은 띠지의 한쪽 측면에는 입금기관명(점포명 포함)과 정사일자를, 다른 쪽 측면에는 정사자인을 날인함
 - 자동정사기로 정사한 은행권의 작은묶음 띠지에 정사일련번호 등이 자동으로 인쇄되는 경우에는 정사일자 및 정사자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나) 은행권 큰묶음 결속

- 사용권 또는 미정리권의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작은묶음 5개의 앞면이 위로 향하고 나머지 5개의 앞면이 아래로 향하도록 작은묶음 띠지 방향이 엇갈리게 정리한 후 큰묶음용 띠지(노끈, PP밴드, PE필름 등)의 중앙선이 은행권면의 가로와 세로의 중앙에서 +자형이 되도록 묶어야 함
 - 은행권 자동정사기 등 자동화 기계로 묶는 경우에는 모든 작은묶음의 앞면이 위로(또는 아래로) 향하도록 정리한 후 큰묶음용 띠지의 중앙선이 은행권면의 가로와 세로의 중앙에서 +자형이 되도록 묶을 수 있음
- 손상권의 경우에는 모든 작은묶음의 앞면이 위로 향하도록 정리한 후 정사자인이 날인된 작은묶음 5개의 측면과 입금기관명 및 정사일자가 날인된 작은묶음 5개의 측면을 같은 방향으로 정리한 후 큰묶음용 띠지의 중앙선이 은행권면의 가로와 세로의 중앙에서 +자형이 되도록 묶어야 함
- 다만, 금융기관이 입금하는 큰묶음내 10개 작은묶음의 정사자는 동일인이어야 함
- ※ 금융기관이 PP밴드로 큰묶음을 결속할 때는 단단히 결속하고, 노끈 또는 광폭띠지로 큰묶음을 결속할 때는 매듭 또는 이음새 부분에 봉인하여 낱장 추출 또는 큰묶음 결속 해체를 방지하여야 함

(다) 주화의 자루 수용

- 수납되는 자루(큰자루 또는 작은자루)별로 입금기관명, 정사자인 및 정사일자를 표시한 띠지로 봉인하고 그 자루면에는 입금기관명, 화종 및 금액, 미정사사용주화 또는 미정사손상주화 구분내용을 표시하여야 함
- 한국은행이 정사한 사용주화의 경우에는 작은자루에 넣어 봉인한 후 다시 큰자루에 넣어 봉인하여야 하나 금융기관이 정사한 주화의 경우에는 작은자루 수용을 생략할 수 있음

<참 고>

화폐의 포장단위

구 분	단 위	수 량	금 액
은행권 ¹⁾	1작은묶음	100장	1백만원
	1큰묶음	10작은묶음 = 1,000장	1천만원
	1포대	10큰묶음 = 100작은묶음 = 10,000장	1억원
주 화	1작은자루	500장	-
	1큰자루	500원화 : 4작은자루 = 2,000장	100만원
		100원화 : 5작은자루 = 2,500장	25만원
		50원화 : 5작은자루 = 2,500장	12만5천원
		10원화 ²⁾ : 10작은자루 = 5,000장	5만원
		5원화 : 8작은자루 = 4,000장	2만원
		1원화 : 10작은자루 = 5,000장	5천원
	1롤(roll)	50장	-
	1상자	500원화 : 20롤 = 1,000장	50만원
		100원화 : 40롤 = 2,000장	20만원
		50원화 : 40롤 = 2,000장	10만원
		10원화 ³⁾ : 50롤 = 2,500장	2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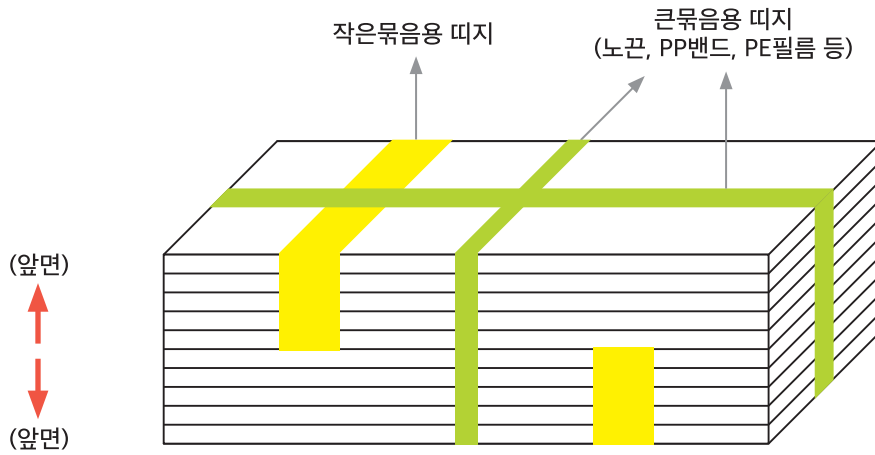
주: 1) 금액은 10,000원권 기준

2) 2006년 이전에 최초 발행된 구 10원화는 1큰자루 = 5작은자루 = 2,500장 = 2만 5천원

3) 2006년 이전에 최초 발행된 구 10원화는 1상자 = 40롤 = 2,000장 = 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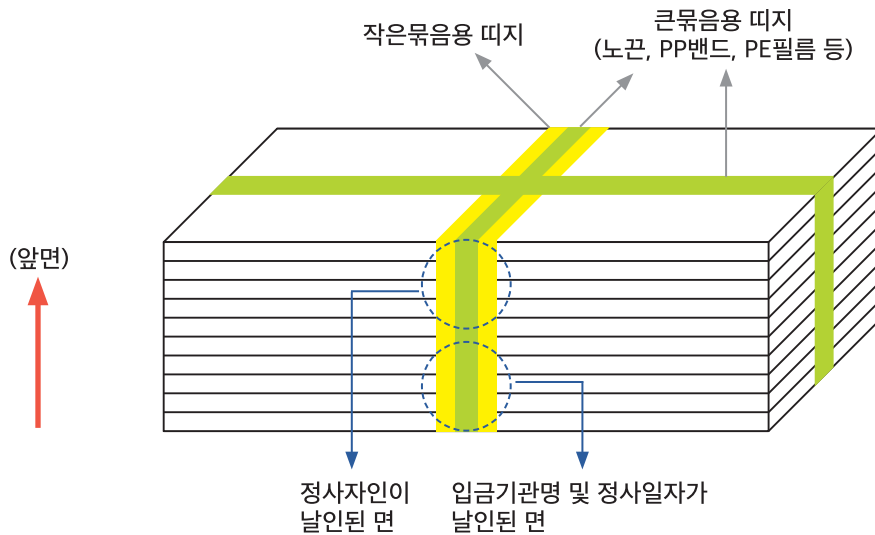
사용권(미정리권 포함)과 손상권의 큰묶음 결속 방법

사용권(미정리권 포함)



※ 은행권 자동정사기 등 기계로 묶는 경우에는 작은묶음별로 그 중앙을 세로로 묶을 수 있으며, 큰묶음별로 10개의 작은묶음을 모두 같은 방향으로 묶을 수 있음

손상권



※ 큰묶음단위로 묶지 아니하고 작은묶음단위로 수납하는 극손상권, 발행중지권 등의 경우에는 작은묶음의 가로와 세로의 중앙을 + 자형으로 묶어야 함

(4) 화폐 수납 관련 제도

(가) 미정사화폐의 수납

- 한국은행은 명절 또는 연말연시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화폐환수 물량이 급증하거나 금융기관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미정사화폐 입금내역서」〈서식 2〉를 첨부하도록 하여 금융기관이 정사하지 않은 화폐를 수납하고 있음
- 미정사 은행권의 경우에는 큰뭉음단위로 수납하며, 입금 금융기관 직원이 보는 앞에서 동 은행권을 보관용기에 넣은 후 동 금융기관 직원이 직접 봉인하여야 함
- 이 경우 한국은행은 입금 금융기관별로 미정사화폐를 구분·보관하며, 빠른 시일(통상 2주일) 내에 해당 입금 금융기관에 동 화폐를 환급하고 있음

(나) 미정리화폐의 수납

- 한국은행은 시중 유통화폐 정화 또는 대국민 발권서비스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금되는 화폐의 진위여부와 장수는 확인하되 손상권과 사용권으로 구분·정리하지 않은 은행권을 수납할 수 있음

3. 화폐정사

가. 의의

- 각 경제주체가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의 깨끗한 화폐를 일상생활에서 쾌적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유통과정에서 위조·변조화폐를 제거함으로써 화폐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 있음

나. 정사 대상

-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수납한 화폐, 화폐교환 또는 국고수납 등으로 환수한 모든 화폐는 정사 대상이 됨

다. 정사업무의 목적

- 화폐 정사업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수행하여야 함
 - 장수와 금액의 확인
 - 위조·변조화폐 색출
 - 전액·반액·무효 판정
 - 사용화폐와 손상화폐의 구분 정리
 - 사용화폐 또는 손상화폐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화폐로 분류
 - 은행권의 작은묶음 또는 큰묶음, 주화의 자루 포장상태 확인

손상화폐 분류기준

은행권	파손	- 은행권 조각을 모아 붙인 것 - 은행권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 - 각종 테이프나 철침 또는 종이 등 이물질이 덧붙은 것
	오염	- 은행권 권면에 낙서,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물감, 잉크 등이 묻은 것 - 악취를 풍기는 등 오염된 것 - 화학약품이나 세균 등에 오염된 것
	변형	- 변색 또는 탈색된 것 - 축소되거나 확대된 것
	기타	- 발행이 중지된 것 - 심하게 접히거나 구겨져 통용에 부적합한 것 등 - 환수된 기념은행권
주화	- 규격 또는 모양이 변형된 것 - 찌그러지거나 녹슬거나 심하게 굽힌 것 - 환수된 기념주화 - 발행이 중지된 것 - 그밖에 통용에 부적합한 것	

라. 정사 방법

- 한국은행의 화폐정사는 은행권의 경우 자동정사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다만, 자동정사기로 정사할 수 없는 극손상권과 주화 등에 대하여는 화폐관리원이 수정사를 실시함

(1) 자동정사

- 자동정사기의 은행권 투입단위는 정사자가 동일인인 10개의 작은묶음으로 구성된 큰묶음 단위(1,000장)로 함
- 자동정사기에 투입된 은행권은 자동정사기에서 사용권과 손상권으로 분류되어 사용권은 작은묶음단위(100장)로 정리 배출되고, 손상권은 자동으로 잘게 잘려서 소각됨
- 자동정사기는 투입된 은행권의 액면종류와 장수를 자동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 과부족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

(2) 수정사

- 극손상권에 대하여는 화폐관리원이 수작업으로 정사를 실시한 후 적출된 사용권을 손이나 계수기로 2차 정사함
- 주화에 대하여 일반 미정사사용주화는 주화계수기 또는 동전셈판 등으로 한 차례 정사하고, 폐기대상 미정사사용주화 및 미정사손상주화는 큰자루별로 개봉한 후 맨눈으로 다른 종류의 주화나 이물질 등을 찾아내어 이를 제거한 후 무게를 달거나 주화계수기 또는 동전셈판 등으로 한 차례 정사함
- 수정사 결과 과부족금이 발생하면 담당계장이 반드시 해당 은행권 작은 묶음 또는 주화 자루의 과부족금 발생여부 및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함

마. 정사결과 과부족금의 정리

-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수납한 화폐를 정사한 결과 과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정사대상 화폐에 다른 종류의 화폐가 섞여 있을 때에는 동 화폐의 금액을 포함하여 과부족금을 산정하며 발견한 과부족금을 그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까지 해당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에 직접 입금하거나 당좌예금계좌에서 직접 차감하여 정리함
 - 한국은행은 정사 과부족금 정리내용을 해당 금융기관에 사전 통보하며 과부족금 발생띠지 또는 검수표를 첨부한 「영수(통지)서」를 정리당일까지 등기우편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송부함

(1) 다액 과부족금

-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납한 화폐를 정사한 결과 다액 과부족금*이 발견된 경우 담당계장과 책임자가 과부족금 발견 여부를 확인하고 담당팀장 또는 부국장(부본부장)은 CCTV 카메라 녹화내용을 재생하여 확인함

* 자동정사 큰묶음당 10장 이상, 수정사 작은묶음당 10장 이상, 다만, 50,000원권은 2장 이상

- 또한 다액 과부족금 발생내용을 해당 금융기관 점포 또는 결제모점에 통보함

(2) 수표 등 혼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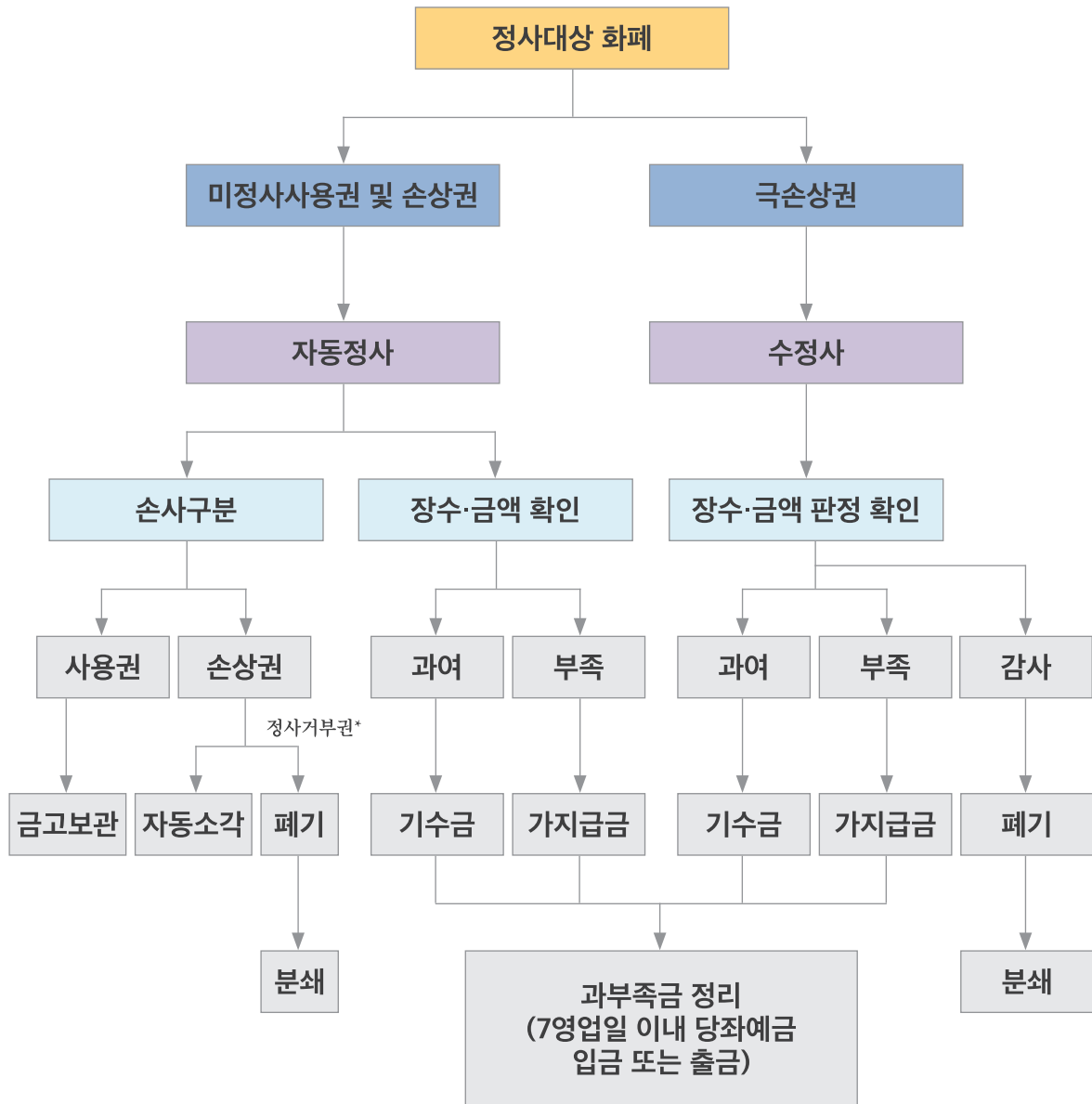
- 한국은행은 화폐 정사과정에서 상품권·수표 등을 발견한 경우 동 금액을 제외하고 과부족금을 산정하며, 과부족금 발생 띠지에 적색으로 혼입내용을 기재하여 해당 금융기관 점포 또는 결제모점에 통보함
- 또한 동 실물을 우편 등으로 인계하고 해당 금융기관 점포장의 인수증 등 증빙을 징구함

바. 위조·변조 화폐의 처리

- 한국은행은 위조·변조화폐를 그 소지자로부터 입수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납한 화폐에서 위조·변조화폐를 발견한 경우에는 「위·변조화폐 신고서」〈서식4〉 및 「소유권 포기서」〈서식5〉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신고하고 그 실물을 관할 경찰서에 송부하여야 함
-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납한 화폐에서 위조·변조화폐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묶음띠지에 적색으로 과부족금 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함
- 위조·변조화폐를 취급할 때는 집게 또는 장갑을 사용하되 복사해서는 안되며, 발견 당시의 원형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참 고>

화폐정사업무 흐름도



* 자동정사기가 정사를 거부한 은행권으로 화폐관리원이 무효 또는 위조·변조 여부와 장수·금액을 재확인함

4. 화폐교환

- 한국은행은 모든 권화종의 원활한 유통과 깨끗한 화폐의 유통을 위하여 발권국과 각 지역본부에 화폐교환창구를 설치하여 ① 권화종 간의 교환, ② 손상화폐 교환 등 화폐교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화폐교환 제도 본래 목적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교환 요청 화폐의 상태에 따라 원칙적으로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사용화폐로 지급하고,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손상화폐)는 제조화폐로 지급함(2022.3.2일부터 적용)

가. 다른 종류의 화폐로 교환

- 한국은행은 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권 또는 주화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 교환요청에 응하여 다른 액면의 사용화폐로 교환해 주고 있음

나. 손상화폐 교환

- 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에서는 훼손, 오염, 기타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손상화폐를 일정한도 내에서 수수료 없이 제조화폐로 교환해 주고 있음

(1) 손상은행권







-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으로서 남아있는 면적이 3/4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을, 남아있는 면적이 2/5이상 3/4미만인 경우에는 반액으로 교환하고, 2/5미만인 경우에는 무효권으로 처리함
-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진 은행권 조각이 같은 은행권 일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쳐서 면적을 계산하여 교환함
- 유통과정에서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경우에는 변형된 후의 면적을

기준으로 교환함

- 은행권의 기번호와 화폐도안 등으로 동일 은행권 여부를 확인함
- 교환기준에 미달하거나 지질이나 색깔의 변화, 그 밖의 원인으로 화폐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지인에게 무효화폐임을 알리고 가능한 한 회수하여 일정 기간 보관하였다가 소각 처리함

<참 고>

손상권 교환기준

▶ 전액 지급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이상인 경우	
	
▶ 반액 지급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이상인 경우	
	
▶ 무효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미만인 경우	
	

(2) 손상주화

- 주화의 종류와 개수를 판정하여 액면금액으로 교환하되, 모양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주화는 교환대상이 되지 않음
- 대량 손상주화의 경우 변형·마모 등으로 동전샘판이나 주화계수기로 개수를 판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의 교환기준에 따라 무게를 재는 방법으로 교환금액을 판정하여 교환할 수 있음

(3) 소손권

- 소손권이란 극손상권 중 화폐의 일부나 전부가 불에 타 재로 변하였거나 오염, 훼손 또는 기타 사유로 극심하게 손상되어 일반적인 극손상권과는 다르게 취급·보관할 필요가 있는 은행권을 말함
- 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에서는 액면금액 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손권을 교환하며, 필요한 경우 교환요구자에게 소손 사유서와 이를 확인하는 관할 경찰서나 소방서 또는 행정관서의 증명서 등을 입증자료로 징구할 수 있음

(불에 완전히 탄 경우)

- 화폐의 형태를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으며 불에 탄 화폐의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그 면적을 판정하여 교환함
- 불에 탄 화폐의 재가 완전히 흩어졌을 경우에는 판정 불가함

(불에 일부가 탄 경우)

- 불에 탄 부분의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형과 재가 붙어있을 경우 판정하여 교환함
- 불에 탄 부분의 재가 흩어져 수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화폐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교환함

5. 화폐의 유통 원활화

가. 주화수급정보센터 운영

- 주화 대량 수요처와 공급처의 명단, 소재지, 연락처, 필요 주화 종류 등의 정보를 등록하여 필요한 기업이나 사람은 누구나 주화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01년부터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www.bok.or.kr)에 「주화수급정보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음

<참 고>

「주화수급정보센터」 이용안내

-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 상단 메뉴중 「화폐」→「주화수급정보센터」를 클릭하여 원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 한국은행 발권국과 지역본부별로 동 센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지역을 클릭하여 주화의 대량수급처를 확인할 수 있음
 - 아울러 대량수급처 신규 등록, 주화수급 관련 의견 또는 정보를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센터의 ‘정보게시란’을 클릭하여 게시할 수 있음

나. 돈 깨끗이 쓰기 홍보

- 한국은행은 국민들의 화폐 사용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화폐제조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돈 깨끗이 쓰기’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
 - TV, 지하철, 공공기관 옥외전광판 등에 ‘돈 깨끗이 쓰기’ 캠페인 공익광고를 방영하고 있음

다.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홍보

□ 한국은행은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전에 따른 여러 사회적 부작용*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급수단으로서 현금이 배제되지 않도록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 관련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취약 계층의 금융소외 및 경제활동 제약, 자연재해, 전산망 마비 등에 따른 상거래 활동의 혼란 등

○ 포스터, 동영상, 웹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현금사용 선택권의 개념 및 보장 필요성에 대해 대국민 홍보 활동을 실시

IV

참고자료



I. 주요 발권정책 추진사업

1. 화폐교환 기준 변경
2. 대량주화 교환을 위한 온라인 예약제 도입
3. 대량 손상주화 무게 기준 수납방식 도입
4.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홍보
5. 현송부문 안전대책 강화
6. 기획성 기념주화의 발행

1. 화폐교환 기준 변경

◆ 한국은행은 2022년 3월 2일부터 화폐교환 시 원칙적으로 사용화폐*를 지급

*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및 교환 창구를 통해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후 위조·변조 화폐 식별, 청결도 판정 등 화폐정사 과정을 거쳐 발행되는 화폐

- 다만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의 교환요청 시 또는 명절(설·추석) 등 특수한 경우는 제조화폐*로 지급하되 교환규모,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용화폐로도 지급 가능

*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되어 한국은행에 납품·보관되다가 시중에 최초로 발행되는 화폐

— 제조화폐 지급은 불요불급한 신권 선호 완화, 추가 화폐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일정 한도 내*로 제한

* 지역별 제조화폐 지급 한도는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참조

〈 새 화폐교환 기준 〉

〈원칙〉 사용화폐 지급

〈예외〉 제조화폐 지급(일정한도 내)

-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
- 명절 등 특수한 경우

- 새 화폐교환 기준 운용을 통해 권·화종별 화폐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 제도 운용의 본래 목적을 공고히 하고, 화폐제조비용 절감 및 실수요 중심의 교환서비스 제공 등의 효과도 기대

2. 대량주화 교환을 위한 온라인 예약제 도입

- ◆ 한국은행은 주화를 주된 지급수단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일반 개인들의 편리한 대량주화 교환을 위하여 2021년 2월 1일부터 「대량주화* 교환 온라인 예약제」를 도입

* 대량주화 기준 : 500원화 2,000개(15.4kg 내외), 100원화 2,500개(13.5kg 내외), 50원화 2,500개(10.4kg 내외), 10원화 5,000개(6.1kg 내외) 이상

- 온라인 예약제는 대량주화 기준을 충족하는 주화 교환 신청자가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교환 일자, 규모 등을 예약하여 지정된 날짜에 교환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임
- 아울러 일관된 화폐교환제도의 운영을 위해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한국은행 본부(지역본부)별 대량주화 교환 기준, 온라인 예약 현황 등을 상세하게 게재

<참 고>

「대량주화 교환 온라인 예약제」 이용안내

-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화폐」 → 「화폐교환 기준 및 신청」 → 「대량주화 교환 신청」을 클릭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대량주화 교환을 희망하는 한국은행 본부(지역본부) 및 날짜를 선택한 후 예약정보를 입력(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필요)
- 예약 신청은 3영업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이 아니면 주화 교환이 제한될 수 있음

3. 대량 손상주화 무게 기준 수납방식 도입

- ◆ 한국은행은 유통화폐의 청결도 유지 등을 위해 훼손·오염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손상화폐) 등을 대상으로 교환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대량 손상주화 교환시 무게단위 수납방식을 도입
 - 찌그러짐, 마모 등으로 동전선풍이나 주화 계수기 등으로 장수를 판정하기 곤란한 작은자루(500장) 이상의 손상주화는 무게를 달아 장수를 판정하여 교환할 수 있도록 개선
- ① (교환 방식) 교환 요청된 대량 손상주화를 자루에 넣어 측정한 무게(자루 자체무게 포함)가 별도로 정한 교환 기준무게의 상·하한 이내일 경우 자루당 표준 주화개수에 화종별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교환
 - 단, 무게 측정 전 육안으로 검사하여 이물질 또는 다른 화종의 혼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분류한 후 무게를 측정
 - 대량 손상주화 교환 기준무게는 화종별로 제조주화의 표준무게에 자루당 주화개수를 곱하여 정하되 측정에 사용하는 자루에 따라 큰자루는 주화 ±2장, 작은자루는 주화 ±1장의 무게 차이를 허용

대량 손상주화 교환 무게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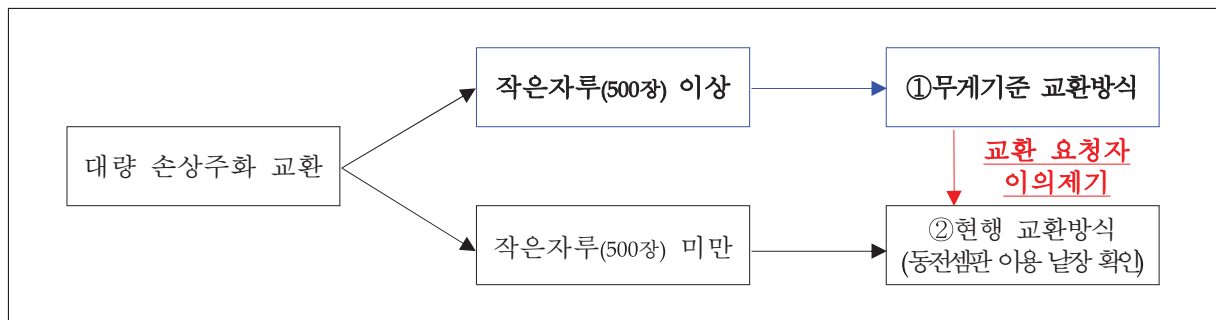
(g, 개)

화 종	장당 제조주화 표준무게	자루당 표준 주화개수		자루 자체무게		대량 손상주화 교환 기준무게					
		큰 자루	작은 자루	큰 자루	작은 자루	큰자루			작은자루		
						표준 ¹⁾	하한 ²⁾	상한 ²⁾	표준 ¹⁾	하한 ³⁾	상한 ³⁾
500원화	7.70	2,000	500	90	20	15,490	15,475	15,505	3,870	3,862	3,878
100원화	5.42	2,500	500	70	15	13,620	13,609	13,631	2,725	2,720	2,730
50원화	4.16	2,500	500	70	15	10,470	10,462	10,478	2,095	2,091	2,099
가~다10원화	4.06	2,500	500	70	10	10,220	10,212	10,228	2,040	2,036	2,044
라10원화	1.22	5,000	500	70	10	6,170	6,168	6,172	620	619	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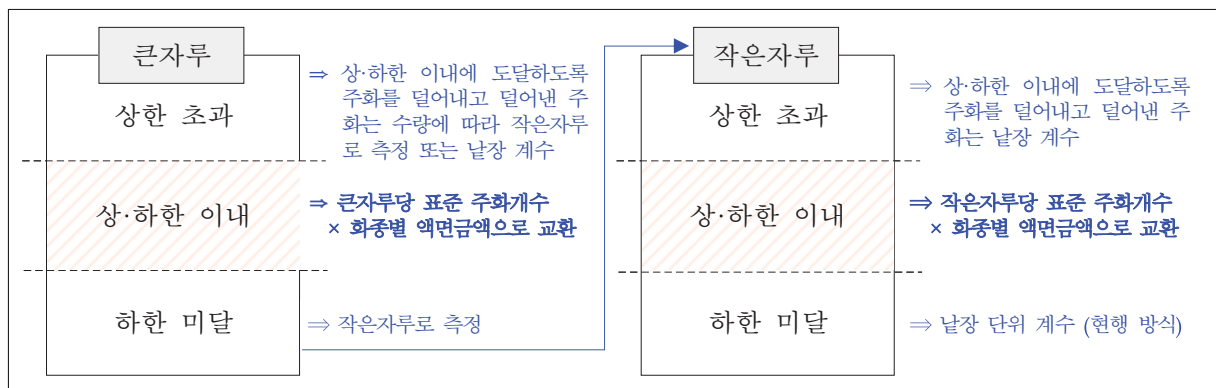
주: 1) (장당 제조주화 표준무게×자루당 표준 주화개수)+자루 자체무게
 2) (장당 제조주화 표준무게×큰자루당 표준 주화개수±2장)+큰자루 자체무게
 3) (장당 제조주화 표준무게×작은자루당 표준 주화개수±1장)+작은자루 자체무게

- ② (교환 절차) 작은자루 단위 이상의 대량 손상주화는 무계기준에 의한 교환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작은자루(500장) 단위 미만의 교환물량에 대해서는 현행 방식(날장 단위 진위 및 개수 확인)을 유지
- 다만, 작은자루 단위 이상의 경우에도 교환 요청자가 교환금액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날장 단위로 계수하여 교환
 - 큰자루로 측정했을 때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무계가 상·하한 범위 이내에 도달하도록 주화를 덜어내고, 하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작은자루를 이용하여 측정 후 작은자루 기준 상·하한 적용
 - 작은자루로 측정했을 때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무계가 상·하한 범위 이내에 도달하도록 주화를 덜어내고, 덜어낸 주화는 날장 단위로 계수하여 교환

개선 후 대량 손상주화 교환업무 처리절차



무계기준 교환방식 예시



4.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홍보

◆ 한국은행은 향후 현금없는 사회로의 진전에 따른 여러 부작용*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급수단으로서 현금이 배제되지 않도록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

- * ① 개인의 지출행위 등에 대한 세세한 정보 노출로 개인의 정보와 자유가 침해
- ②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외국인 방문객들의 소비 지출을 비롯한 경제 행위의 어려움
- ③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자연재해 또는 사고 등으로 금융전산망이 마비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최후 결제수단의 소멸 등

① (포스터)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금융기관 등에 배포



② (동영상) 동영상을 제작하여 무료(당행 홈페이지 등) 및 유료 채널(SMR,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

③ (한국은행 홈페이지 게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여 홍보

-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에 접속한 후의 「화폐」 → 「홍보교육자료」 탭에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관련 내용을 추가

— 포스터, 홍보영상뿐 아니라 주요국의 현금없는 사회 진전에 대한 대응 내용 등도 게재

5. 현송부문 안전대책 강화



한 국 은 행

수신자 수신자 참조

제 목 화폐현송 유관업무 부서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1. 화폐현송업무 관련 부서장은 「현송업무 시행절차」 제2조제5항에 의거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현송정보에 대한 비밀준수 서약서(붙임)”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서약서 징구 상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약서 제출 대상 : 차량 배차, 운전, 호송 등 화폐현송 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원
 - 해당부서 : 발권국, 재산관리실, 안전관리실, 지역본부
- 서약서 제출 시기 : 해당직원의 담당직무 발령시(본인 자필서명)

붙 임 : 현송정보에 대한 비밀준수 서약서 1부. 끝.

발 권 국 장

수신자 발권국장(화폐수급팀장), 발권국장(화폐관리1팀장), 발권국장(화폐관리2팀장), 발권국장(발권정책팀장), 부산본부장(부산업무팀장), 부산본부장(부산화폐관리팀장), 대구경북본부장(대구경북업무팀장), 대구경북본부장(대구경북화폐관리팀장), 목포본부장, 광주전남본부장(광주전남업무팀장), 광주전남본부장(광주전남화폐관리팀장), 전북본부장(전북업무팀장), 대전충남본부장(대전충남업무팀장), 대전충남본부장(대전충남화폐관리팀장), 발권국장(화폐연구팀장), 충북본부장, 강원본부장(강원업무팀장), 인천본부장(인천업무팀장), 인천본부장(인천화폐관리팀장), 제주본부장(제주업무팀장), 경기본부장(경기업무팀장), 경남본부장(경남업무팀장), 강릉본부장, 울산본부장, 포항본부장, 강남본부장(강남총무팀장), 재산관리실장(조달관리팀장), 안전관리실장(경비팀장)

팀원(4급)	발권기획팀장	부국장(2급)	발권국장	전결 12/04
시행 발권기획팀-1249 (2019.12.04.)		접수 ()		
우 0622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2	/http://www.bok.or.kr	직 무 권	21-02-001
전화 560-1622	/전송 560-1080	/cho53@bok.or.kr	/한:	/비공개(5)

6. 기획성 기념주화의 발행

- 한국은행은 2007년부터 국가적 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성 기념주화 이외에 한국은행이 자체 기획한 기념주화(이하 '기획성 기념주화')를 매년 발행하고 있음
 - 이는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릴만한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자연 등을 주제로 선정하여 발행함으로써 기념주화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문화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임
- 2017년부터는 우리나라 자연환경의 아름다움과 생태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에 있는 22곳의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를 시리즈로 발행하고 있음

기획성 기념주화 발행 현황

시리즈명	연도	화종수 및 명칭	액면가 (만원)	발행량 (천장)
전통민속놀이	2007	1종(탈춤)	2	51.0
	2008	1종(강강술래)	2	51.0
	2009	1종(영산줄다리기)	2	51.0
유네스코 세계유산	2010	1종(종묘)	3	51.0
	2011	1종(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5	31.2
	2012	1종(석굴암과 불국사)	5	30.0
한국의 문화유산 ¹⁾	2013	3종(한글, 수원화성, 창덕궁)	5	30.2
	2014	3종(하회와 양동, 장경판전, 남한산성)	5	57.5
	2015	2종(경주, 백제)	3	31.2
	2016	2종(고인돌, 조선왕릉)	5	27.3
한국의 국립공원 ²⁾	2017	2종(지리산, 북한산)	3	21.9
	2018	3종(덕유산, 무등산, 한려해상)	3	32.3
	2019	3종(속리산, 내장산, 경주)	3	31.7
	2020	4종(월악산, 계룡산, 한라산, 태안해안)	5	30.0
	2021	4종(소백산, 태백산, 다도해해상, 주왕산)	2	30.0
	2022	3종(가야산, 변산반도, 오대산)	5	22.5
계		35종		579.8

주: 1) 발행대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같았으나, 발행명칭만 변경
 2) 2023년까지 22개 국립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발행할 예정

Ⅱ. 업무협조 요청사항

1.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2. 위조·변조 화폐의 특징, 처벌내용 및 발견시 행동요령
3. 위조지폐 취급 관련 유의사항 및 제·개정 위폐 신고서식 통보
4. 주화의 훼손 금지와 훼손주화 신고 방법

1.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기준의 제정 취지 및 내용)

- 화폐도안의 무분별한 이용을 허용할 경우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화폐 위조 및 변조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설정하여 국민의 화폐도안 이용행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은 1999년 이후 화폐도안의 건전한 사용을 위해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에 따라 정하여진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국은행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에서 정하여진 요건 이외의 방법으로 화폐도안을 이용할 경우 한국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화폐 모조품의 경우 신청자는 승인내용에 따라 제작한 화폐 모조품을 한국은행 담당자가 확인한 다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이 종료되었거나 이용기간이 종료된 화폐 모조품은 한국은행 또는 한국은행이 지정한 장소에서 담당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한국은행 발권국 발권정책팀(전화 02-560-1609, FAX 02-560-1099)

-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발행 화폐의 도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폐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사할 목적으로 화폐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수입·수출 및 판매하는 행위는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발권정책팀-212, 2020. 2. 26. 발권국장 결재)

1.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의 목적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이하 ‘화폐도안’)이 일반 광고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예상되는 화폐 위변조 심리의 조장 및 화폐의 품위와 신뢰도 저하를 예방하고, 화폐도안의 건전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이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등을 정하는 데 있다.

2. ‘화폐도안의 이용 또는 복제’란 다음 내용의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은행이 발행한 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거나, 화폐의 색상이나 규격, 문자 또는 도안 등을 이용하여 화폐와 유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유·무형의 이미지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가. 이미지의 크기

나. 이미지 복제에 사용된 기법 또는 재료

다. 화폐도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이미지와 합성했는지 여부

라. 화폐의 문자, 도안 등의 변경 여부

3. 화폐도안의 이용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금지하되, 주화 도안의 경우 인쇄삽화 및 전자적 삽화로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가. 공통 사항

① 화폐도안은 한국은행이 별도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화폐 도안을 원래의 모습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도안 위에 광고 문구를 표기하거나 도안을 구기거나 늘리거나 자르는 등 화폐의 존엄성과 품위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③ 화폐 도안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종류의 원판, 인쇄판, 디지털화된 저장매체, 그래픽 파일 등은 사용 후 지체 없이 복구 불가능하게 폐기 또는 삭제해야 한다.

나. 화폐 모조품

① “화폐 모조품”이란 화폐의 외관을 갖춘 인쇄물이나 복제품을 말한다.

② 화폐 모조품은 교육, 연구, 보도, 재판 목적으로만 제조할 수 있다.

- ③ 은행권 모조품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가로 및 세로의 배율을 유지하면서 은행권 규격의 200% 이상이거나 또는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예시-I 참조>
- ④ 은행권 모조품의 소재는 은행권의 소재와 명확히 다르면서 쉽게 구별될 수 있는 소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⑤ 주화 모조품은 금속을 제외한 지류, 직물류, 기타 재료로만 제조할 수 있으며, 주화와 동일한 중량으로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인쇄 삽화

- ① “인쇄 삽화”란 서적, 신문, 잡지 등의 인쇄물에 삽입한 화폐도안을 말한다.
- ② 인쇄 삽화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가로 및 세로의 배율을 유지하면서 화폐 규격의 150% 이상이거나 또는 75% 이하이어야 하며, 도안 일부의 인쇄 삽화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예시-II 참조>
- ③ 인쇄 삽화는 단면이어야 한다.
- ④ 인쇄 삽화에는 알기 쉬우면서도 화폐도안과 분리되지 않는 방법으로 ‘SPECIMEN’ 또는 ‘보기’ 문자를 화폐도안의 초상 부분을 제외한 여타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II 참조>
- ⑤ ‘SPECIMEN’ 또는 ‘보기’ 문자는 은행권 앞면 중앙 상단의 ‘한국은행’ 보다 크고 화폐의 기초색과 확연하게 대비되는 불투명한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화폐의 일부만을 복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예시-II 참조>

라. 전자적 삽화

- ① “전자적 삽화”란 온라인 자료, 전자책 등 전자매체에 삽입한 화폐도안을 말한다.
- ② 전자적 삽화의 해상도는 72dpi 이하이어야 한다.
- ③ 전자적 삽화에는 알기 쉬우면서도 화폐도안과 분리되지 않는 방법으로 ‘SPECIMEN’ 또는 ‘보기’ 문자를 화폐도안의 초상 부분을 제외한 여타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III 참조>
- ④ ‘SPECIMEN’ 또는 ‘보기’ 문자는 은행권 앞면 중앙 상단의 ‘한국은행’ 보다 크고 화폐의 기초색과 확연하게 대비되는 불투명한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화폐의 일부만을 복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예시-III 참조>

4. 3.의 기준 이외의 방법으로 화폐도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

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사전에 이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은 동 요청내용이 1.의 이용기준 취지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화폐도안의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별지 서식>

- 가. 화폐도안 이용자의 성명(또는 업체명),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나. 화폐도안의 구체적인 사용처 및 이용기간
 - 다. 이용하고자 하는 도안의 그래픽 디자인과 규격
 - 라. 화폐 모조품인 경우 업체명, 작품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된 시안 <예시-Ⅳ 참조> 및 제작 수량
 - 마. 기타 한국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내용
5. 4.의 화폐도안 이용승인은 승인내용이 발송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유효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7영업일전까지 한국은행에 화폐도안 이용 기간연장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6. 화폐 모조품의 이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현용 은행권의 가로·세로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각 길이가 현용 은행권보다 10mm 이상 크도록 제작하여 그 실물을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화폐 모조품은 특별히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7. 화폐 모조품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실물 전량을 한국은행 또는 한국은행이 지정한 장소에서 복구 불가능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8. 한국은행은 3.과 4. 이외의 방법으로 화폐도안을 이용한 자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한국은행의 경고 및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2020. 3. 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화폐도안 이용 승인 신청서

구 분		신규(), 연장()		
신청자	대표자 성 명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담당자 성 명	(인)	담당자 생년월일	년 월 일
	담당자 소 속	(업체명) (부서명)	담당자 직 책	
	주 소	* 소속업체의 업무상 신청 시 소속기관 주소 기재		
	담당자 연락처	(전 화) (휴대폰)	담당자 전자우편	
이 용 물	화폐 모조품() 인 쇄 삽화() 전자적 삽화()	이용기간	(시작일) 년 월 일 (종료일) 년 월 일	
구체적 사용처				
권중·화중		규 격	mm	
제작 수량	장	재 질		
인 쇄 면	단면(), 양면()	인쇄 방법		
특기사항				
첨부 자료				
준수사항	신청자는 화폐 모조품 이용이 끝난 후에는 그 실물을 한국은행 또는 한국은행이 지정한 장소에서 한국은행 담당자의 입회하에 폐기하겠으며, 화폐 모조품이 유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민사·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			

- 주 : 1) 한국은행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신청 내용과 달리 승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는 필요시 화폐도안 이용물 시안 등 별도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단, 연장 신청 시 신규 신청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한국은행권과 주화의 도안 이용에 관한 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은행의 화폐도안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한국은행 총재 귀하

화폐도안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은행은 화폐도안의 이용 승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필수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 기간
- 화폐도안 이용 신청 관련 사실 여부 확인 및 승인 결과 통보 - 화폐도안 이용 점검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책, 주소, 연락처(사무실 전화번호, 이메일)	수집일 또는 화폐도안 이용 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화폐도안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선택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 기간
- 화폐도안 이용 신청 관련 사실 여부 확인 및 승인 결과 통보 - 화폐도안 이용 점검	연락처(휴대폰)	수집일 또는 화폐도안 이용 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위 선택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여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기타 고지사항

아래의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은행 총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화폐도안 이용 승인 통보서

1. 승인 내용

구 분		신규(), 연장()		
신 청 자	대표자 성 명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담당자 성 명	(인)	담당자 생년월일	년 월 일
	담당자 소 속	(업체명) (부서명)	담당자 직 책	
	주 소			
	담당자 연락처	(전 화) (휴대폰)	담당자 전자우편	
이 용 물	화폐 모조품() 인 쇄 삽화() 전자적 삽화()	이용기간	(시작일) 년 월 일 (종료일) 년 월 일	
구체적 사용처				
권종 또는 화종		규 격	mm	
제작 수량	장	재 질		
인 쇄 면	단면(), 양면()	인쇄 방법		
특기 사항				
변경 내용				

2. 승인 조건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화폐 모조품 제작 확인서

승 인 일	년 월 일	문서번호	발권정책팀-
확 인 자	(소속) 한국은행 발권국	(성명)	(인)
【제작 내용】			
구체적 사용처		이용기간	(시작일) 년 월 일 (종료일) 년 월 일
권종·화종		규 격	mm
제작 수량	장	재 질	
인 쇄 면	단면(), 양면()	인쇄 방법	
특기사항 및 조치사항			
신 청 자	대표자 성 명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담당자 성 명	(인)	담당자 생년월일
	담당자 소 속	(업체명) (부서명)	담당자 직 책
	담당자 연락처	(전 화) (휴대폰)	담당자 전자우편
인 쇄 업 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업 체 명		직 책
	연 락 처	(전 화) (휴대폰)	전자우편
	준수사항	신청자와 인쇄업자는 화폐 모조품 인쇄 과정에서 발생한 파본과 제작에 사용된 원판, 인쇄판, 디지털화된 저장매체, 그래픽 파일 등을 폐기 또는 삭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 화폐 모조품이 유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	

주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명 생략)

한국은행의 화폐도안 이용 승인 내용에 따라 제작된 화폐 모조품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화폐모조품 제작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은행은 화폐모조품 제작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읽어 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필수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 기간
- 화폐도안 이용 승인에 따른 화폐모조품 제작 확인 - 화폐도안 이용 점검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책, 주소, 연락처(사무실 전화번호, 이메일)	확인서 제출일 또는 화폐도안 이용 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화폐도안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선택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 기간
- 화폐도안 이용 승인에 따른 화폐모조품 제작 확인 - 화폐도안 이용 점검	연락처(휴대폰)	확인서 제출일 또는 화폐도안 이용 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위 선택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여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기타 고지사항

아래의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쇄업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은행 총재 귀하

(첨 부)

화폐도안의 이용 예시

1. 예시- I (화폐 모조품)

□ 50%로 축소된 이미지



* “보기” 는 표기하지 않아도 됨

실제 은행권 규격

은행권 축소·확대시 모조품의 최대 및 최소 규격

	현행 규격(100%)	50% 이하 축소	200% 이상 확대
50,000원권	154 × 68 mm	109 × 48 mm 이하	217 × 97 mm 이상
10,000원권	148 × 68 mm	104 × 48 mm 이하	210 × 97 mm 이상
5,000원권	142 × 68 mm	100 × 48 mm 이하	201 × 97 mm 이상
1,000원권	136 × 68 mm	96 × 48 mm 이하	193 × 97 mm 이상

□ 200%로 확대된 이미지



* “보기” 는 표기하지 않아도 됨

실제 은행권 규격

2. 예시-II(인쇄 삽화)

□ 75%로 축소된 이미지



* “보기” 는 표기하지 않아도 됨

실제 은행권 규격

은행권 축소·확대시 삽화의 최대 및 최소 규격

	현행 규격(100%)	75% 이하 축소	150% 이상 확대
50,000원권	154 × 68 mm	134 × 58 mm 이하	188 × 84 mm 이상
10,000원권	148 × 68 mm	128 × 58 mm 이하	182 × 84 mm 이상
5,000원권	142 × 68 mm	122 × 58 mm 이하	174 × 84 mm 이상
1,000원권	136 × 68 mm	117 × 58 mm 이하	167 × 84 mm 이상

□ 150%로 확대된 이미지



*“보기”는 표기하지 않아도 됨

실제 은행권 규격

3. 예시-III(전자적 삽화)



4. 예시-IV(제4조에 의한 화폐 모조품 제작)



2. 위조·변조 화폐의 특징, 처벌내용 및 발견시 행동요령

가. 위조·변조 화폐의 특징

□ 위조 : 권한이 없는 자가 진폐의 외관을 가진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함

(은행권)

- ① 외관은 진권과 비슷하게 보이나 인쇄상태가 선명하지 못함
- ② 지질의 촉감이 진권과 다르며 두께가 약간 두꺼움
- ③ 숨은그림(watermark)이 없거나 모양이 다르고 선명하지 못함
- ④ 복사한 흔적이 부분적으로 나타남
- ⑤ 도안인물이 명확하지 않고 액면표시의 문자가 조잡함
- ⑥ 색채가 단순함
- ⑦ 은행권을 상하(좌우)로 움직이면 홀로그램의 무늬가 좌우(상하)로 움직이지 않거나(50,000원권), 홀로그램의 이미지와 색상이 변하지 않음(10,000원권과 5,000원권)
- ⑧ 앞면 요판잠상 부분에 잠상이 보이지 않음
- ⑨ 색변환 잉크로 인쇄된 뒷면 액면 숫자의 색깔이 변하지 않음

(주 화)

- ① 쉽게 휘어짐
- ② 표면의 광택이 흐림
- ③ 도안의 모양이나 문자가 선명하지 않음
- ④ 지름, 두께, 무게 등이 일정하지 않음
- ⑤ 주화둘레의 톱니모양선이 일정하지 않음
- ⑥ 동전끼리 부딪히거나 떨어뜨리면 둔탁한 소리가 남

□ 변조 : 외관이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폐를 가공하여 그 가치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함

- ① 표리를 분리하여 두께가 다소 얇음
- ② 예리한 기구에 의해 분열(分裂)되어 있음

- ③ 접속부분의 일부가 파손·마모되어 있음
- ④ 원형과 유사하나 서로 다른 은행권의 분열된 조각을 모아 붙인 흔적이 있음
- ⑤ 그밖에 육안으로 변형된 상태가 관찰됨

나. 화폐의 위조·변조 관련 처벌내용

- 화폐를 위조·변조하여 유통시킬 때에는 「형법*」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짐

*** 형법 관련 조항**

-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④ 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제207조에 기재한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2조(미수범) 제207조, 제208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다. 위조화폐 발견시 행동요령

- 영업점 창구에서 현금을 수납하거나 화폐를 정리하는 과정 등에서 위조화폐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관련 내용을 해당 금융기관 본점 위폐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며, 본점 위폐업무 담당자는 「위조화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함
- 발견된 위조화폐는 그 소지자에게 돌려주지 않음
- 위조화폐를 다룰 때에는 수사기관에서 지문채취가 용이하도록 집게 또는 장갑을 사용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창구수납시 위조화폐를 발견한 경우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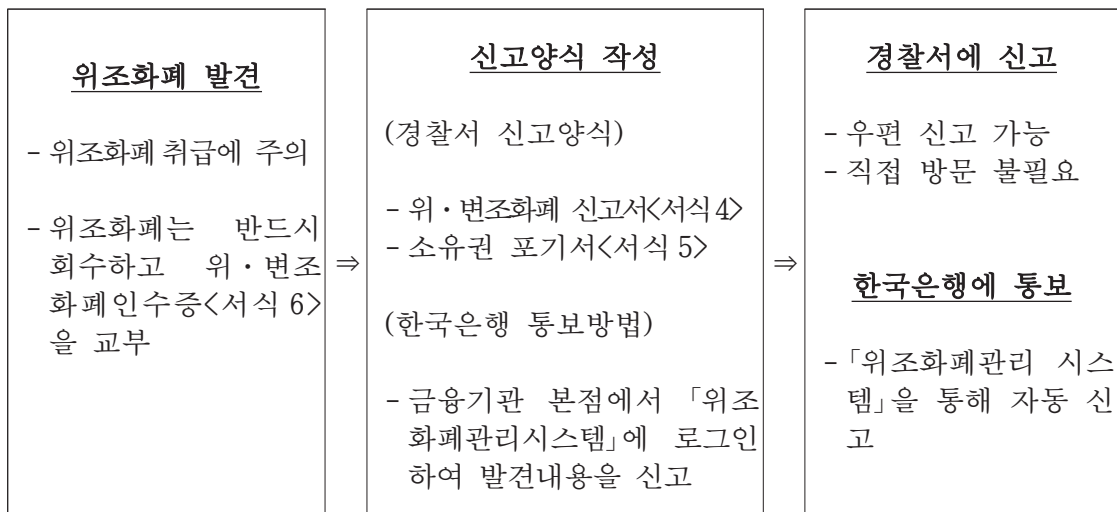
- 금융기관 직원이 위조화폐 실물을 강제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나, “위조화폐는 즉시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동 위폐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죄’ (형법 제210조)로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받는다는 점” 등을 소지자에게 자세히 설명한 후 반드시 회수하여야 함(필요시 소지자에게 인수증을 발급)
- 가능하면 위조화폐 소지자의 인상착의나 신분을 확인하도록 노력함

□ 위조화폐 발견시 한국은행 통보 및 경찰서 신고방법

- 한국은행 통보방법 : 본점 위폐업무 담당자는 「위조화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은행에게 신고함
- 경찰서 신고방법 : 위조화폐 발견내용을 「위·변조화폐 신고서」<서식4> 및 「소유권 포기서」<서식5>에 기재하여 관할 경찰서에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신고함

* 한국은행에 먼저 통보한 경우에는 「위조화폐관리시스템」에서 동 신고내용을 출력하여 경찰서에 신고 시 이용할 수 있음

위조화폐 발견시 처리절차



3. 위조지폐 취급 관련 유의사항 및 제·개정 위폐 신고서식 통보



한국은행

수신자 수신자참조

제 목 위조지폐 취급 관련 유의사항 및 제·개정 위폐 신고서식 통보

1. 최근 금융기관 창구에서 현금 입금 또는 교환과정 중 발견된 위조지폐를 고객에게 반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의 위조지폐 반환청구에 대한 검토 내용(붙임1)을 송부하오니 향후 위조화폐로 판단되는 은행권과 주화를 고객에게 반환(또는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최근에 당행이 제·개정된 위·변조화폐 신고관련 서식(붙임2)을 송부하오니 2011.1.1.일부터 당행 및 경찰서앞 위폐 신고시 변경된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화폐/경제교육 > 우리나라의 화폐 > 위조방지장치 및 신고서식 > 위조지폐 신고서식에 게시예정 (2011.1.10.부터 이용 가능)

붙 임 : 1. 법무부의 “위조지폐 처리 방법에 대한 질의 검토”
2. 위·변조화폐 신고관련 서식(3종) 1부. 끝.

한국은행 총재



수신자 국민은행장, 신한은행장, 우리은행장, 하나은행장, 한국SC제일은행장, 한국씨티은행장, 한국외환은행장, 경남은행장, 광주은행장, 대구은행장, 부산은행장, 전북은행장, 제주은행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중소기업은행장, 한국산업은행장, 새마을금고연합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신용협동조합회장, HSBC은행장, 우정사업본부장

팀원(4급)

발권정책팀장

시행 발권정책팀-2245 (2010. 12. 30.) 접수 ()
우(100-794)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가 110번지 / <http://www.bok.or.kr> /직무권한: 00-00-006
전화 02)759-4592 /전송02)759-4600 / shingn@bok.or.kr /공개

(붙임)

법무부의 “위조지폐 처리 방법에 대한 질의 검토”

(2010. 12. 15)

① 검토 배경

- 2010. 12. 한국은행, 위조지폐 관련 처리 방법에 대하여 문의

② 질의 사항

- 한국은행 또는 은행에서 교환 또는 입금 등으로 위조지폐를 소지하게 되었으나, 원 소지자가 위조지폐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는지

③ 검토 의견

- 위조지폐는 소지가 금지되는 절대적 禁制品이어서 원 소지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지자가 교환 목적으로 은행에 교부한 상황에서 위폐임이 밝혀졌다면 원 소지자는 은행에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은행도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음
- 참고로 일반인이 위조지폐 발견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소지자로부터 위조지폐를 임의로 제출 받아 수사를 한 후, 압수물을 몰수하거나, 전부 위조되었음을 표시한 후 최종소지자에게 환부하게 됨
- 따라서, 한국은행 또는 은행에서 위조지폐를 발견할 경우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을 하면서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면 족하고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음

▶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106조(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 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 내지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및 제132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18, 2007.6.1>

제485조(위조등의 표시) ① 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조나 변조인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 위조통화취급규칙 [경찰청예규 제315호, 2003.7.24, 일부개정]

제4조(송부받은 위조통화의 조치) ① 경찰청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조통화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감정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은행 또는 조폐공사에 감정 의뢰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감정결과 제1항의 통화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분류하여 부호를 부여한다.

4. 주화의 훼손 금지와 훼손주화 신고 방법

-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105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2011년 12월 17일부터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용해, 분쇄,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됨
 -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훼손하고자 하는 자가 「한국은행법」 제53조의2에 따라 「주화 훼손 허가 신청서」<서식 7>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 주화 훼손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주화를 훼손한 사실을 알거나 훼손주화를 발견한 경우에는 「훼손주화 발견 신고서」<서식 8>에 기재하여 가까운 경찰서나 한국은행(본부 또는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함

Ⅲ. 관련 법규 및 규정 발취

1. 한국은행법
2. 발권규정
3. 발권규정 시행세칙
4. 발권규정 시행절차

1. 한국은행법

제2장 금융통화위원회

제3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한국은행권(韓國銀行券)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 20. (이하 생략)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1절 한국은행권의 발행

제47조(화폐의 발행)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제47조의2(화폐단위) ① 대한민국의 화폐단위는 원으로 한다.

- ② 원은 계산의 단위가 되고 100전으로 분할된다.
- ③ 원은 영문으로 WON으로 표기한다.
- ④ 전은 영문으로 JEON으로 표기한다.

제48조(한국은행권의 통용)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法貨)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제49조(한국은행권의 권종 등)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떠한 규격·모양 및 권종(券種)의 한국은행권도 발행할 수 있다.

제49조의2(위조·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 관리) ① 한국은행은 위조되거나 변조(變造)된 한국은행권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끝난 후에는 그 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을 한국은행에 집중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變造)된 한국은행권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끝난 후에는 그 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을 한국은행에 집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0조(한국은행 보유 한국은행권)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한국은행권은 한국은행의 자산 또는 부채가 되지 아니한다.

제51조(한국은행의 채권회수 등) ①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으로 채권을 회수하며 한국은행권으로 예금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예금거래는 한국은행에 예금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한다.

② 한국은행은 예금자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한국은행권으로 예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환급기(還給期)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가 된 후 돌려준다.

제52조(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① 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 한국은행권 권종 간의 교환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훼손·오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신권(新券)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제53조(주화의 발행) ① 한국은행은 주화(鑄貨)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화에 관하여는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의2(주화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해·분쇄·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의3(기념화폐의 발행) 한국은행은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기 위한 한국은행권 또는 주화를 발행할 수 있다.

제5절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과의 업무

제72조(보호예수업무) 한국은행은 정부에 속하는 증권, 문서,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을 보호예수할 수 있다.

제8절 그 밖의 업무

제82조(외국환업무 등)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귀금속의 매매

제8장 보칙

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발권규정 [금융통화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 생략 >

제2조(화폐발행) ① 한국은행총재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폐를 발행한다.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화폐의 액면, 크기, 소재, 도안 등을 정한다.

제3조(화폐도안) < 생략 >

제4조(화폐제조) 한국은행총재는 화폐를 조폐기관에 발주하여 제조한다.

제5조(화폐교환) ① 한국은행총재는 훼손·오염 또는 마모 등의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폐를 수수료를 받지 않고 교환한다.

② 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의 화폐에 대한 교환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제6조(화폐임치) < 생략 >

제7조(발행중지) ① 한국은행총재는 화폐의 원활한 유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종류의 화폐발행을 중지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폐의 발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8조(화폐소각) ~ 제9조(위임) < 생략 >

3. 발권규정 시행세칙 [한국은행 총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생 략 >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금“이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발행된 한국은행권(이하 “은행권“이라 한다)과 주화를 말한다.
2. “제조화폐“란 조폐기관이 제조하여 한국은행에 납품된 화폐를 말한다.
3. “사용화폐“란 한국은행이 정사하여 통용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화폐를 말한다.
4. “손상화폐“란 한국은행이 정사하여 훼손, 오염, 소손 등의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한 화폐를 말한다.
5. “미정사사용화폐“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수납하거나 교환 수납한 화폐 중 통용에 적합한 상태로 구분된 화폐로서 한국은행이 정사하지 않은 화폐를 말한다.
6. “미정사손상화폐“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수납하거나 교환 수납한 화폐 중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구분된 화폐로서 한국은행이 정사하지 않은 화폐를 말한다.
7. “극손상권“이란 은행권면의 일부가 찢어지거나 오염·훼손의 정도가 심하여 자동정사기로 정사하기 어려운 은행권을 말한다.
8. “소손권(燒損券)“이란 극손상권 중 화폐의 일부나 전부가 불에 타 탄화(炭化)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일반적인 극손상권과 다르게 취급·보관할 필요가 있는 은행권을 말한다.
9. ~ 11. < 생 략 >
12. “작은묶음“이란 은행권을 100장씩 묶은 묶음을 말하며, “큰묶음“이란 작은 묶음을 10개씩 묶은 묶음을 말한다.
13. “작은자루“란 주화를 500장씩 넣은 자루를 말하며, “상자“와 “큰자루“란 한국은행 발권국장(이하 “발권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일정 단위의 롤(주화를 50장씩 원통 형태로 포장한 것을 말한다) 또는 여러 개의 작은자루를 넣은 포장 단위를 말한다.

14. “발권창구“란 화폐의 수납·지급이나 교환 등을 위해 소관부서장이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15. ~ 24. < 생략 >
25. “금융기관 등“이란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신용이 확실하다고 소관부서장이 인정한 거래처를 말한다.

제2장 화폐의 제조 및 발행

제3조(화폐도안 자문위원회) ~ 제9조(제조화폐 인수) < 생략 >

제3장 수납 및 지급

제1절 총 칙

제10조(기본원칙) 현금, 어음·수표 등의 수납업무와 현금 지급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업무 시작시각과 마감시각은 한국은행 「취업규칙」에서 정한 영업개시와 영업종료 시각으로 한다. 다만, 명절·연말 등 계절적 요인이나 금융기관의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마감시각을 연장할 수 있으며 발권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마감 후 취급을 할 수 있다.
2. < 생략 >
3. 요청인이 입회한 발권창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현금 지급은 제조화폐나 사용화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담당직원 2명 이상이 금액의 정확성을 차례로 확인한 후에 수납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발권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 1명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6. < 생략 >
7. 지급 담당자는 발권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증표가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증표에 책임자의 검인을 받은 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발권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책임자의 검인을 받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제2절 금융기관 등과의 수납 및 지급

제11조(수급예고제와 미정사사용화폐 거래중개) ① 소관부서장은 금융기관 등에게

수납·지급의 시기, 방법, 규모 등을 사전에 예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미정사사용화폐는 금융기관 간 수수를 유도하거나 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

제12조(수납 상태)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화폐를 종류별로 수납할 때는 제28조에서 정한 정사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정리된 상태별로 수납하여야 한다.

1. 은행권 : 미정사사용권, 미정사손상권, 극손상권
2. 주화 : 미정사사용주화, 미정사손상주화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화폐수급의 원활화, 유통화폐 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권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서 정한 정사방법의 일부를 생략한 화폐를 수납할 수 있다.

제13조(수납 단위와 검수방법) ① 화폐의 수납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권 : 큰묶음
2. 주화 : 큰자루

② 제1항에서 정한 수납 단위에 대한 검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권 : 큰묶음별로 작은묶음의 개수를 세어 수납한다. 다만, 투명비닐로 포장되어 큰묶음과 작은묶음 단위별 검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포대의 개수를 세고 포대별 큰묶음별로 작은묶음의 개수를 세어 수납한다.
2. 주화 : 큰자루의 개수를 세고 큰자루별로 무게를 달아 수납한다. 다만, 종류별·상태별 1개 큰자루의 수납 무게기준은 발권국장이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정사손상화폐, 극손상권, 발행중지화폐, 기념화폐 등을 수납하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라 화폐를 수납할 때에는 발권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 단위나 검수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4조(지급거래등록제) 소관부서장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지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발권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점포와 거래직원을 사전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지급 단위) 금융기관 등에 지급하는 은행권의 지급 단위는 큰묶음으로, 주화의 지급 단위는 상자나 큰자루로 한다.

제16조(지급 비율과 상태) < 생략 >

- 제17조(서약서) ① 발권국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납한 화폐의 정사결과 발생한 과부족금의 처리와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각 금융기관 대표자로부터 서약서<별지 제 1-1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그 본점 소재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을 통하여 받아야 한다.
- ② 제2조제25호에서 정한 신용이 확실하다고 인정한 거래처로부터도 제1항을 준용하여 서약서나 이에 준하는 내용의 문서를 받아야 한다.

제4장 보 관

제18조(보관원칙) ~ 제22조(현금 과부족 처리) < 생 략 >

제5장 교 환

- 제23조(교환원칙) ① 화폐교환에는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에 따른 소손권 교환의 경우에는 발권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3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훼손, 오염 등으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제조화폐로 교환하되 교환규모,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용화폐로도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의 훼손 여부는 발권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정한다.
- ③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 사용화폐로 교환하되 명절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제조화폐로도 교환할 수 있다.
- ④ 발권국장은 제조화폐로 교환할 경우 교환 요청인 1명당 1일 화폐종류별 제조화폐 교환지급 최대한도를 설정·운용할 수 있다. 다만, 소관부서장은 발권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한도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있다.
- ⑤ 교환 요청된 화폐가 오물, 화학약품, 분진, 냄새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일 경우 교환 책임자는 요청인에게 이를 제거한 후 교환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 ⑥ 제24조나 제25조에서 정한 교환기준에 미달하거나 교환이 불가능한 화폐는 교환 요청인에게 그 화폐가 무효임을 알리고 가능한 한 이를 회수하여 발권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 처리한다.
- ⑦ 소관부서장은 대량 화폐, 극손상권, 소손권 교환이나 제25조제2항에 따른 손상주화 교환의 경우에는 발권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요일을 지정하

거나 예약한 사람에 한하여 교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⑧ 대량 주화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 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

제24조(은행권 교환기준과 방법) ①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은행권은 발권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아있는 면적을 판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액면금액의 전액, 반액 중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교환하거나 무효로 처리한다.

1. 남아있는 면적이 3/4 이상 : 전액
2. 남아있는 면적이 2/5 이상, 3/4 미만 : 반액
3. 남아있는 면적이 2/5 미만 : 무효

② 제1항제1호·제2호에도 불구하고 앞면과 뒷면을 모두 갖추고 있지 않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진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것은 교환하지 아니한다.

③ 소손권은 교환 담당자와 책임자가 발권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적을 함께 판정하여 제1항에 따라 교환한다.

제25조(주화 교환기준과 방법) ① 주화는 발권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종류와 개수를 판정하여 액면금액으로 교환한다. 다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정하기 곤란한 주화는 교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형, 마모 등으로 동전셈판이나 주화계수기 등으로 개수를 판정하기 어려운 주화는 발권국장이 정하는 교환기준에 따라 무게를 재는 방법으로 교환금액을 판정하여 교환할 수 있다.

제6장 정사(整査) 및 감사(鑑査)

제26조(정사원칙) 화폐정사는 자동정사기로 실시한다. 다만, 자동정사기로 정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권국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다.

제27조(정사대상) ① 화폐정사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수납한 화폐와 화폐교환 등에 따라 수납한 화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발권국장은 정사대상 화폐나 정사생략 화폐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전쟁, 비상상황 발생 등으로 발권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미정사손상화폐에 대하여도 정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정사방법) 화폐정사는 화폐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

야 한다.

1. 위조·변조화폐 색출
2. 제24조와 제25조의 교환기준에 따른 화폐의 전액, 반액, 무효 판정
3. 사용화폐와 손상화폐 구분 정리
4. 장수와 금액 확인
5. 발권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묶음과 자루 수용

제29조(감사대상과 방법) ~ 제82조(위임) < 생 략 >

4. 발권규정 시행절차 [한국은행 발권국장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제13조(전표 등 증표 처리) < 생 략 >

제3장 수납 및 지급

제2절 금융기관 등과의 수납 및 지급

제14조(은행권 수납) ① 세칙 제12조제1항제1호와 세칙 제13조에 따라 수납하는 은행권 큰묶음은 그 종류·상태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정리된 상태로 수납하여야 한다.

1. 작은묶음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47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묶여 있어야 한다.
 - 가. 작은묶음 띠지의 한쪽 측면에는 입금기관명(부점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정사일자가, 다른 쪽 측면에는 정사자인이 표시되어야 한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등이 자동정사기로 정사한 은행권의 작은 묶음 띠지에 정사일련번호 등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정사일자와 정사자인이 생략될 수 있다.
2. 큰묶음은 정사자가 동일한 작은묶음 10개가 제4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묶여 있어야 한다. 다만, 미정사손상권과 극손상권 큰묶음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미정사손상권 큰묶음의 경우에는 차례로 5개의 작은묶음은 정사자인이 찍힌 측면이 위로 향하게, 나머지 5개의 작은묶음은 입금 기관명과 정사일자가 찍힌 측면이 위로 향하게 묶여 있어야 한다.
 - 나. 극손상권 큰묶음은 작은묶음 10개의 정사자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5조(주화 수납) ① 세칙 제12조제1항제2호와 세칙 제13조에 따라 수납하는 주화는 그 종류·상태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용·포장된 상태로 수납하여야 한다.

1. 큰자루별로 입금 금융기관명, 입금 금융기관의 정사자인·정사일자를 표시

한 띠지로 봉인되어야 한다.

2. 큰자루 바깥면에는 입금 금융기관명, 주화의 종류와 금액, 미정사사용주화나 미정사손상주화 구분이 표시되어야 한다.
 3. 큰자루는 제51조를 준용하여 수용·포장되어야 하며 작은자루 수용과 검수표 투입이 생략될 수 있다.
-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주화 수납 시 세칙 제13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적용하는 미정사사용주화와 미정사손상주화의 1개 큰자루당 기준무게는 다음과 같다.

(단위 : kg)

종 류	하 한	상 한
500원화	15.22	15.86
100원화	13.21	14.00
50원화	10.19	10.70
가~다10원화	10.10	10.40
라10원화	6.16	6.50

- ③ 제2항에 따라 주화를 수납할 때에는 작은자루를 사용하지 않고 큰자루에 상태별로 수용·포장된 무게가 종류별 하한 이상, 상한 이하일 경우 수납한다.

제16조(미정사화폐 또는 미정리화폐 수납) ① 소관부서장은 세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명절·연말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수납물량이 급증하거나 금융기관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정사화폐 입금내역서<별지 제 II-2호 서식>를 받고 금융기관이 정사하지 않은 화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납할 수 있다.

1. 소관부서장은 은행권을 큰묶음 단위로 검수하여 수납할 수 있으며, 입금 금융기관 직원이 보는 앞에서 비닐봉투(비닐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자루 등 보관용기에 넣어 봉인할 자로 지정된 금융기관 직원이 직접 봉인하게 하여야 한다.
 2. 소관부서장은 제1호에 따라 봉인된 은행권을 입금 금융기관별로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빠른 시일 내에 입금 금융기관에 환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큰묶음 단위로 검수하여 수납하였으나 작은묶음의 과부족, 다른 권종의 혼입 등과 같은 잘못이 나중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미정사화폐의 수납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발권국장은 세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통화폐 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이 미정리화폐를 수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

서장은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하여 수납한다.

제17조(미정사손상화폐 등 수납) ① 세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미정사손상화폐, 극손상권, 발행중지화폐, 기념화폐 등의 수납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납 담당자는 이를 수납 단위별로 검수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1. 큰묶음 단위가 되지 않는 극손상권의 수납 단위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작은묶음으로도 할 수 있다.
2. 큰자루 단위가 되지 않는 미정사손상주화의 수납 단위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작은자루로도 할 수 있다.
3. 발행중지화폐, 기념화폐의 수납 단위는 낱장으로도 할 수 있다.

② 세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극손상권을 수납할 때 수납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미정사사용권이나 미정사손상권이 극손상권 작은묶음 안에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극손상권 작은묶음이 미정사사용권이나 미정사손상권 큰묶음 안에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한은금융망을 이용한 화폐 수납신청 처리) 수납 담당자와 책임자는 화폐의 수납 단위별 검수·수납을 완료한 즉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 수납 담당자는 회계결제시스템에 금융기관명, 수납금액, 종류별·상태별 수납내역 등을 입력하여 수납 책임자에게 당좌계정 입금의뢰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고 수납 책임자는 당좌계정 입금표와 수납내역의 일치여부를 대조·확인하여 당좌예금 관리부서로 전송한다.
2. 수납 담당자는 수납 책임자의 확인이 완료된 즉시 당좌계정 입금표를 당좌예금 관리부서로 송부한다.
3. 수납 담당자는 당좌예금 관리부서의 당좌예금 입금 처리 후 회계결제시스템에서 당좌계정 입금증<별지 제Ⅱ-1호 서식>을 출력하여 해당 금융기관 직원에게 교부하고 이 입금증에 첨부된 당좌계정입금 처리내역서를 절취하여 금융기관 직원의 수령확인 서명을 받는다.
4. 수납 담당자가 총 수납금액 또는 입금 금융기관 착오 등으로 당좌계정 입금거래를 일괄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납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당좌예금 관리부서에 일괄취소를 요청한다.

제19조(지급거래등록제) ① 소관부서장은 화폐지급거래를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등에게서 한국은행 화폐지급거래 등록서<별지 제Ⅱ-3호 서식>에 따라 거래점 포별 거래직원에 대한 인적사항과 사진(전자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미리 징구하여 회계결제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등이 등록 신청한 거래점포나 거래직원의 수가 지급횟수, 지급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적정하게 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급 담당자는 화폐를 지급할 때마다 금융기관 등의 거래직원에게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시받아 신분증과 사전에 등록된 인적사항 및 사진을 거래직원과 대조하는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화폐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인사이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사전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점포에 전화확인 등을 통하여 정당수취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한은금융망으로 지급신청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등록된 거래직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제조화폐 지급) < 생 략 >

제21조(미정사사용화폐 지급) 소관부서장은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은행 정사를 생략한 모든 종류의 미정사사용화폐를 세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한은금융망을 이용한 화폐 지급신청 처리) 제10조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한은금융망으로 화폐의 지급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 지급 담당자는 금융기관 등이 사전 등록한 거래직원으로부터 신분증과 함께 신청기관, 신청번호, 비밀번호 등 지급신청 내용을 제시받아 제19조에 따라 등록된 인적사항과 사진을 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거래직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그 지급신청 내용을 회계결제시스템에 입력하여 당좌예금 관리부서(팀, 계)로 전송한다.
2. 지급 담당자는 당좌예금 관리부서가 전송한 지급승낙서와 현금영수증을 출력하여 내용의 일치 여부를 대조·확인하고, 지급승낙서의 취급책임자 성명이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인감송부서상의 성명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한 후 지급 책임자의 검인을 받는다.

3. 지급 담당자는 지급 책임자의 검인을 받은 후 제1호에 따른 거래직원의 얼굴과 신분증 사진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거래직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현금영수증에 그 거래직원의 영수인이나 서명을 받고 화폐를 지급한다.

제3절 당점수표 및 타점권의 수납 및 지급

제23조(당점수표의 수납) ~ 제37조(현금검사) < 생 략 >

제5장 교 환

제38조(원칙) ① 화폐교환에는 제6조와 제7조제1항제1호·제2호를 준용한다.

- ② 큰자루 이상 대량주화와 제39조제2항에 따른 소손권의 교환 금액판정 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환 요청인의 입회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세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교환 요청인 1명당 1일 화폐종류별 제조화폐 교환지급 최대한도는 은행권은 1백만원, 주화는 50만원으로 한다.
- ④ 소관부서장은 해당 지역의 화폐교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최대한도 내에서 교환 요청인 1명당 1일 화폐종류별 제조화폐 교환지급 자체 한도를 적정하게 설정·운용한다.
- ⑤ 소관부서장은 명절 수요, 손상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교환 사유 및 교환 요청인 1명당 1일 한도를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평하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 ⑥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손상화폐 교환 신청서<별지 제Ⅱ-7호 서식>를 받아 제38조의2에 따라 고의 훼손 여부를 판정하여 교환한 후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8조의2(화폐의 고의 훼손 판정) ①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의 교환 요청인이 고의 훼손을 인정하거나 손상화폐 교환 신청서 등을 통해 손상 사유, 손상화폐 입수 경위 등의 기술을 거부하는 경우 고의 훼손으로 간주한다.

- ② 교환 요청인이 고의 훼손이 아님을 주장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의 훼손으로 간주한다.

1. 인위적인 낙서, 도장 및 약품 또는 화학처리로 인한 손상

2. 칼 등 날카로운 물질에 의하여 예리하게 절단된 경우
3. 비슷한 손상유형으로 복수의 교환 요청인이 또는 1개월 내 2회 이상 동일인이 손상화폐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화폐교환 책임자 및 담당자가 고의 훼손임을 알고 있거나 고의 훼손이라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39조(은행권 면적·교환금액 판정) ① 세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은행권의 권종별·장별 면적 및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지거나 흩어진 경우라도 기번호, 문양, 그 밖의 부분을 동일한 은행권의 일부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이어 붙인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2. 물, 불, 화학약품 등에 의하거나 자연적으로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는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3. 화폐교환 담당자가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폐교환 책임자가 면적을 확인·검인하여 판정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손권은 교환요청 건별로 담당 팀장(부재 시에는 그의 상위책임자)으로부터 면적 판정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받은 후 교환하여야 한다.

1. 은행권 종류별 교환금액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손권
2. 완전히 재가 된 상태의 소손권
3. 낱장이 서로 붙어있어 분리하기 어려운 소손권
4. 그 밖에 장수와 금액의 판정에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손권

③ ~ ⑤ < 생 략 >

제40조(주화 개수·교환금액·상태 판정) ① 세칙 제25조와 제45조제2항에 따른 주화 교환금액·상태 판정방법과 상태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전셈판이나 주화계수기 이용 : 사용주화, 손상주화, 미정사손상주화
2. 세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2항의 기준무게 이용 : 손상주화
3. 기념주화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작은자루당 기준무게의 하한 미만인 경우로서 손을 이용 : 손상주화

② 세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루별 주화만의 무게가 종류별 하한 이상, 상한 이하일 경우 액면금액에 자루당 주화 개수를 곱한 금액으로 교환한다. 다만, 1그램(g) 이하의 무게는 소수점 첫째자리에

서 반올림한다.

1. 종류별 작은자루당 기준무게

(단위 : kg)

종류	제조주화 장당 표준무게	작은자루당 주화 개수	작은자루당 기준무게	
			하 한	상 한
500원화	7.70	500	3,842	3,858
100원화	5.42	500	2,705	2,715
50원화	4.16	500	2,076	2,084
가~다10원화	4.06	500	2,026	2,034
라10원화	1.22	500	609	611

2. 종류별 큰자루당 기준무게

(단위 : 개, g)

종류	제조주화 장당 표준무게	큰자루당 주화 개수	큰자루당 기준무게	
			하 한	상 한
500원화	7.70	2,000	15,385	15,415
100원화	5.42	2,500	13,539	13,561
50원화	4.16	2,500	10,392	10,408
가~다10원화	4.06	2,500	10,142	10,158
라10원화	1.22	5,000	6,098	6,102

③ 제2항에 따라 주화를 교환할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화폐교환 담당자와 화폐교환 책임자가 함께 종류를 판정하고 주화만의 무게를 단 후 작은자루나 큰자루에 담아 화폐교환 담당자가 날인하고 교환일자를 표시한 띠지로 봉인하여야 한다.

제41조(화폐교환 과정에서 발견된 무효화폐의 처리) < 생 략 >

제6장 정사 및 감사

제1절 총 칙

제42조(손상화폐 분류기준) ① 손상화폐로 분류하는 화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은행권

- 가. 조각난 은행권을 모아 붙인 은행권이나 은행권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은행권

- 나. 은행권면에 낙서,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물감, 잉크 등이 묻은 은행권, 악취를 풍기는 은행권 또는 그밖에 오염·오손된 은행권
- 다. 변색되거나 탈색된 은행권 또는 축소되거나 확대된 은행권
- 라. 각종 테이프나 철침 또는 종이 등 이물질이 덧붙은 은행권이나 구멍이 뚫린 은행권
- 마. 환수된 기념은행권 및 발행이 중지된 은행권
- 바. 그밖에 통용에 부적합한 은행권
-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화
 - 가. 변형되거나 찌그러진 주화
 - 나. 녹슨 주화
 - 다. 심하게 굽힌 주화
 - 라. 환수된 기념주화 및 발행이 중지된 주화
 - 마. 그밖에 통용에 부적합한 주화
- ② 사용화폐 또는 손상화폐로 판정하기 어려운 화폐의 경우에는 이를 사용화폐로 분류한다.

제43조(정사 생략대상 화폐) ~ 제46조(화폐관리원별 정사업무) < 생략 >

제47조(작은묶음 묶는 방법) ① 은행권 작은묶음을 묶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권 또는 미정리권 : 초상화가 있는 은행권면(이하 “앞면“이라 하고 그 반대쪽을 “뒷면“이라 한다)이 위로 향하도록 정리하여 그 왼쪽 끝에서 가로길이의 1/3 되는 곳에 띠지의 중앙선이 위치하도록 세로로 묶어야 한다. 다만, 은행권 자동정사기 등 자동화 기계로 묶는 경우에는 앞면이 위로 향하도록 정리하여 그 중앙에 띠지의 중앙선이 위치하도록 세로로 묶을 수 있다.
 2. 손상권 또는 감사를 마친 은행권 : 은행권면의 중앙에 띠지의 중앙선이 위치하도록 세로로 묶어야 한다. 다만, 극손상권 또는 제49조에 따른 손상권의 경우에는 먼저 반액권이 전액권 위에 오도록 정리하여야 하며, 은행권 검수기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손상권의 경우에는 은행권면의 한 쪽 끝에서 가로길이의 1/3 되는 곳에 띠지의 중앙선이 위치하도록 세로로 묶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큰묶음단위에 미달하는 작은묶음의 경우에는 띠지의 중앙선이 은행권면의 가로와 세로의 중앙에서 +자형이 되도록 묶어야 한다.

제48조(큰묶음 묶는 방법) 은행권 큰묶음을 묶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권 또는 미정리권 : 순차적으로 작은묶음 5개는 앞면이 위로 향하고 나머지 5개는 앞면이 아래로 향하도록 작은묶음 띠지 방향이 엇갈리게 정리한 후 큰묶음용 띠지(노끈, PP밴드, PE필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중앙선이 은행권면의 가로와 세로의 중앙에서 +자형이 되도록 묶어야 한다. 다만, 은행권 자동정사기 등 자동화 기계로 묶는 경우에는 모든 작은묶음의 앞면이 위로(또는 아래로) 향하도록 정리한 후 큰묶음용 띠지의 중앙선이 은행권면의 가로와 세로의 중앙에서 +자형이 되도록 묶을 수 있다.
2. 손상권 또는 감사를 마친 은행권 : 작은묶음의 띠지가 엇갈리지 않도록 정리한 후 큰묶음용 띠지의 중앙선이 은행권면의 가로와 세로의 중앙에서 +자형이 되도록 묶어야 한다.

제49조(덧붙이기) ① 부분적으로 손상된 은행권에는 그 부분의 뒷면에 백색용지를 덧붙인다.

- ② 심하게 손상된 은행권에는 그 은행권 크기의 백색용지를 뒷면에 붙인 다음 앞면에 “전액” 또는 “반액” 등의 문구를 표시하고 판정자가 날인한다.

제50조(화폐관리원 정보 표시) < 생 략 >

제51조(주화의 수용) ① 큰자루에는 작은자루를, 상자에는 롤을 다음과 같이 넣어야 한다.

포장단위	화종별 수용 수량 ¹⁾					
	500원화	100원화	50원화	10원화	5원화	1원화
큰 자 루	4 (2,000)	5 (2,500)	5 (2,500)	5 ²⁾ (2,500)	8 (4,000)	10 (5,000)
상 자	20	40	40	40 ³⁾	-	-

주 : 1) ()는 작은자루 수용을 생략하는 경우에 큰자루에 수용하는 낱장 주화의 장수임

2) 라10원화의 경우에는 10작은자루(5,000장)임

3) 라10원화의 경우에는 50롤임

- ② 화폐관리원은 정사를 실시한 주화를 큰자루에 넣어 봉인하거나 롤 단위로 포장한 후 상자에 넣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큰자루 단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작은자루에 넣어 봉인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봉인된 작은자루, 큰자루 또는 상자의 외부 면에는 화종, 금액, 상태(사용·손상·폐기주화)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 안에는 부서명, 화

중, 금액 및 정사일자를 표시하고 취급자인을 날인한 검수표<별지 제Ⅱ-8호 서식>를 넣은 후 큰자루 또는 상자별로 무게를 달아서 화종과 금액의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주화의 경우에는 부서명과 정사일자 및 화폐관리원 정보가 표시된 띠지로 봉인하고 검수표 투입을 생략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100장 또는 50장씩 별도로 자루에 넣어 봉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루에는 화종, 부서명, 금액 및 봉인일자를 표시하고 화폐관리원과 봉인한 자가 각각 봉인한 곳에 날인하여야 한다.

⑤ 작은자루의 정량에 미달하는 낱장 주화의 경우에는 검수표와 함께 적당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며 현송 시에는 보관용기를 봉인하여야 한다.

제52조(정사·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무효화폐의 처리) ~ 제62조(지역별 정사제) <생략>

제2절 정사 및 감사 결과 과부족금 처리

제63조(과부족금의 처리단위) 정사·감사 결과 발생한 과부족금의 처리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권 과부족금의 처리단위는 큰묶음으로 한다. 다만, 큰묶음 속에 서로 다른 정사자가 정사한 작은묶음이 섞여 있거나 그밖에 큰묶음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작은묶음으로 할 수 있다.
2. 주화 과부족금의 처리단위는 작은자루 또는 큰자루로 할 수 있다.

제64조(혼입 시 과부족금 처리) 정사대상 화폐에 다른 종류의 화폐 또는 어음·수표 등이 섞여 있을 때 과부족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정사대상 은행권에 다른 종류의 은행권이 섞여 있을 때에는 그 은행권의 금액을 포함하여 과부족금을 산정하고, 어음·수표 등이 섞여 있을 때에는 그 어음·수표 등의 금액을 제외하고 과부족금을 산정한다.
2. 화폐관리 책임자는 제1호에 따른 혼입내용을 해당 과부족금 발생 띠지에 적색으로 기재하여 해당 금융기관 점포 또는 결제모점에 통보하고, 나중에 어음·수표 등 실물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수증<별지 Ⅱ-40호 서식> 등 증빙을 받아야 한다.
3. 정사대상 주화에 다른 종류의 주화 등이 섞여 있을 때 과부족금의 처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 제65조(과부족금의 확인 및 기록) ① 화폐관리 책임자 또는 화폐관리계장은 정사·감사 결과 과부족금이 발생한 은행권과 주화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화폐관리계장이 직접 정사·감사한 결과 과부족금이 발생한 은행권이나 주화는 다른 화폐관리원이 확인하여야 하며, 은행권 자동정사기로 정사한 결과 과부족금이 발생한 은행권은 확인을 생략한다.
- ② 화폐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과부족금 발생 띠지나 검수표 등에 정사·감사한 부서명, 화폐종류, 과부족금 내역을 표시하고, 화폐관리 책임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과부족금이 다액인 경우에는 화폐관리 책임자가 소관부서장에게 즉시 그 내용을 보고하고 가능하다면 그 원인을 규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다른 부서에게서 현수한 화폐에서 다액 과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과부족금에 대하여는 한국은행 부서별, 입금기관별로 그 명세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66조(과부족금의 계정처리) ~ 제134조(각종 서식) < 생 략 >

<< 관련 서식 >>

<서식 1> 서약서

<서식 2> 미정사화폐 입금내역서

<서식 3> 한국은행 화폐지급거래 등록서

<서식 4> 위·변조화폐 신고서

<서식 5> 소유권 포기서

<서식 6> 위·변조화폐 인수증

<서식 7> 주화 훼손 허가 신청서

<서식 8> 훼손주화 발견 신고서

〈서식 1〉

서 약 서

한국은행 총재 귀하

당행(회)이 귀행(귀행의 임치화폐보관점 포함, 이하 같음)과 화폐를 출납할 경우 및 귀행의 중재에 의하거나 또는 직접 타금융기관과 화폐를 출납할 경우 다음 각 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행(회)은 귀행에서 정한 기준대로 정사절차를 마친 화폐를 귀행에 입금하거나 타금융기관에 지급하겠습니다.
2. 당행(회)이 귀행에 입금 또는 타금융기관에 지급한 화폐를 후일 귀행 또는 타금융기관이 임의로 정한 시일에 당행(회) 직원의 입회없이 정사한 결과 과부족금이 발생하여 그 차감부족액의 보전을 요청할 때에는 과부족금이 발생한 때지 또는 검수표와 교환하여 즉시 귀행 또는 해당금융기관에 변제하겠습니다.
3. 당행(회)이 귀행에 입금한 화폐를 귀행이 정사 생략하고 당행(회)에 지급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 이 경우 후일 당행(회)이 다시 정사한 결과 과부족금이 발생하더라도 귀행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행(회)이 귀행에 입금한 화폐를 귀행이 정사 생략하고 타금융기관에 지급하거나 또는 타금융기관이 귀행에 입금한 화폐를 귀행이 정사 생략하고 당행(회)에 지급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 이 경우 후일 타금융기관 또는 당행(회)이 임의로 정한 시일에 당행(회) 직원 또는 타금융기관 직원의 입회없이 정사한 결과 과부족금이 발생하여 그 차감부족액의 보전을 요청할 때에는 과부족이 발생한 때지 또는 검수표와 교환하여 해당 금융기관간에 즉시 변제 처리하고 귀행에는 어떠한 부담도 끼치지 않겠습니다.
5. 당행(회)은 귀행의 중재에 의하거나 또는 직접 타금융기관과 현금을 출납할 경우 타금융기관에 대한 서약 내용에 관해서는 이 서약서를 타금융기관에 갈음하여 귀행이 보관함으로써 타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 주 소

명 칭

대표자

(인)

〈서식 2〉

미정사화폐 입금내역서

한국은행 국(본부, 분실)장 귀하

금번 당행(중앙회,우체국)은 으로(로) 인하여 부득이 귀행
에서 정한 기준대로 정사를 하지 아니한 은행권을 아래와 같이 입금하오며,
동 은행권에 대해서는 년 월 일까지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입금 은행권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에는 귀행의 미정사화폐 입금제한 등의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권 종	큰뭉음 수	금 액	봉인할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인 감	
계						

년 월 일

결제(거래)모점 △△은행(중앙회,우체국) △△(부,지점,센터*)장 (인)

* 해당 기관의 결제(거래)모점

〈서식 3〉

한국은행 화폐지급거래 등록서

한국은행 국(본부)장 귀하

귀행에서 화폐를 지급받을 수 있는 당행(중앙회, 우체국) 거래점포 및 거래직원을 년 월 일자로 아래와 같이 등록하오며, 본 등록에 따라 기존의 거래점포 및 거래직원 등록내용은 모두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 점포명 ¹⁾	거래직원 ²⁾			전화번호	비고 (신규여부)
	직위	성명	생년월일		

- 주 : 1) 한국은행의 지급이 빈번한 영업점 등으로 결제(거래)모점을 포함함
 2) 거래직원(책임자 이상) 수는 과다하지 않아야 하며, 새로 등록하는 거래직원에 대해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명함판 사진 가로 4cm × 세로 5cm 크기) 또는 이미지 파일을 제출해야 함

붙임 : 사진 매

년 월 일

결제(거래)모점 △△은행(중앙회,우체국) △△(부,지점,센터*)장 (인)

직인확인**

- * 해당 기관의 결제(거래)모점
 ** 결제(거래)모점장의 직인을 대조 확인하여야 함

<서식 4>

위·변조화폐 신고서

(제 호)

수신 : 경찰서, 한국은행 본부

1. 발견일자 :		년 월 일	2. 발견지역 : ()시·도, ()구·군	
3. 종류 및 수량	종 류	새 은행권(50,000원권, 10,000원권, 5,000원권, 1,000원권) 구 10,000원권(은선 6개 노출, 은선 8개 노출, 은선 없음) 구 5,000원권(은선 있음, 은선 없음) 구 1,000원권 기타 화폐()		
	기 번 호	(예 : 1234567가가가, AA1234567A)		
	수 량	장 (※ 화폐종류나 기번호가 다른 경우 별도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4. 위조 방식	위 조 방 법	일반프린터, 레이저프린터, 복사기, 인쇄기, 그림, 기타()		
	위조 방지 장치	숨 은 그 림	없음, 있음【방법 : 삽입, 복사, 그림, 기타(), 이미지 : 진폐와 유사, 상이】	
		은 선	없음(이미지복사), 있음【방법 : 삽입, 부착, 그림, 기타(), 재료 : 은박지, 필름, 기타()】 ※ 50,000원권 입체형 부분노출은선 포함	
		홀 로 그 램	없음(이미지복사) 있음【방법 : 부착, 색칠, 기타(), 재질 : 은박지, 필름, 기타()】	
		색 변환잉크	뒷면 하단 숫자의 색이 변함, 변하지 않음, 기타()	
		형 광 물 질	자외선으로 비춰 보았을 때 형광이 나타남(위치 :), 나타나지 않음	
합 지 여 부	앞면위폐, 앞면일부위폐, 뒷면위폐, 뒷면일부위폐, 기타()			
5. 발견자	개 인	최종소지자 인 적 사 항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연락처(Tel) :	
		발 견 경 위	거스름돈 확인과정, 금융기관창구 인출과정, 현금취급기기(ATM등) 입출금과정, 소지금액중 발견, 습득, 기타()	
	금 융 기 관	금 융 기 관 명	기관 및 지점명 : 연락처(Tel) :	
		발 견 경 위	정사과정, 교환입금액 확인과정, ATM 입금액 확인과정, ATM 현금 보충과정, 계수기 사용과정, 고객 위폐확인 요청, 기타()	
6. 특이 사항	* 특별히 보고할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별지사용 가능)하되 ATM 사용·확인과정에서 위폐 발견시 우선통보도 병행			

위 내용은 사실입니다.

년 월 일

신고 금융기관 및 직원 :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찰서 접수번호 : 20□□-□□□□□□ 송치번호 : 20□□-□□□□□□

<서식 5>

소유권 포기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연락처		
주거지				
다음 위·변조화폐의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소유권 포기인 : (인)				
번 호	화폐의 종류 및 액면금액	기번호 (주화 : 표시연도)	수 량(장)	비 고

경찰서 귀중

<서식 6>

년도 제 호

위·변조화폐 인수증

귀 하

아래의 위·변조화폐를 한국은행의 관련규정에 따라
인수하였습니다.

1. 액면금액 및 수량 :

2. [기번호(은행권) :
 [표시연도(주화) :

년 월 일

인 수 자 :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서식 7>

주화 훼손 허가 신청서

신청인	성명(직업)	(인) ()			생년월일	
	소속 (대표자)	()			직책	
	주소					
	연락처	(전화) (휴대폰)			전자우편	
훼손 목적 및 사용처						
훼손 방법	직접 훼손시					
	제3자 위탁시					
대상 화종별 수량	500원화	100원화	50원화	10원화	계	
	장	장	장	장	장	
	기타화종 (종류별 기재)					
훼손 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특기사항						
첨부자료						

- 주: 1) 한국은행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신청내용과 달리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은 필요시 별도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특기사항 란에는 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뒷면의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은행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한국은행 총재 귀하

한국은행의 발권업무

발행인 이창용
편집인 전태영
발행처 한국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태평로 2가)
www.bok.or.kr
발행일 2022년 5월 31일
제 작 (주)제일프린테크

이 책자에 대한 질의 또는 제안은 한국은행 발권기획팀(02-560-1621, 1622, 1628)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에 실린 화폐도안은 한국은행 발권국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습니다.

ISSN 979-11-5538-130-4

현금사용 선택권의 보장은
모두를 위한 포용입니다.

본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개선·건의는
발권국 발권기획팀(☎02-560-1621, 1622, 162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